



제3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2016. 4. 26.

금오공과대학교
[재정위원회]

목 차

I. 제3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1
----------------------------	---

II. 첨부자료	9
----------------	---

1. 부의 및 가결안건	9
--------------------	---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안 일부개정 규정안	11
---	----

2) 2016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안	17
--	----

3) 2016학년도 제1차 대학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안)	59
---------------------------------------	----

2. 회의록취록 전문	105
-------------------	-----

제3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제3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금오공과대학교

일 시 제3회 재정위원회 임시회<2016년4월26일(목) 개회17시00분, 산회18시05분>

장 소 금오공과대학교 중회의실

의사일정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안 일부개정 규정안
2. 2016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안
3. 2016학년도 제1차 대학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안)

부의된 안건	의결상황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안 일부개정 규정안	원안대로 가결(전원찬성)
2. 2016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안	원안대로 가결(전원찬성)
3. 2016학년도 제1차 대학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원안대로 가결(전원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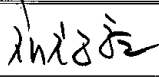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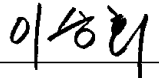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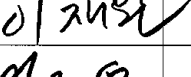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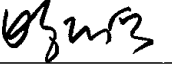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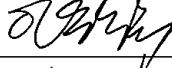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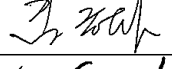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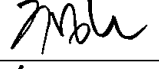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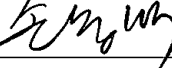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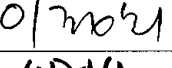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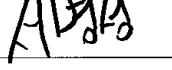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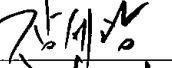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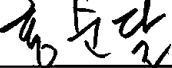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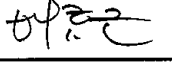
□ 회의록 서명부

연번	소 속	직위(급)	성 명	서 명	비고
1	전자공학부	교 수	채 창 현		위원장
2	기획협력처	기획협력처장	이 승 희		부위원장
3	교 무 처	교무처장	이 재 원		
4	학 생 처	학생처장	방 대 석		
5	사 무 국	사무국장	이 용 학		
6	학 생 처	학생과장	김 종 필		
7	교 수 회	부회장	정 연 구		
8	교양교직과정부	교 수	최 낙 렬		
9	경영학과	교 수	구 정 호		
10	입학관리본부	직 원	손 창 식		
11	산학협력단	직 원	이 정 희		
12	기계시스템공학과	재학생	서 명 성		
13	컴퓨터공학과	재학생	유 병 창		
14	총동창회	사무국장	장 세 광		
15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회계사	홍 순 달		
간사	사 무 국	재무과장	배 효 근		

□ 위원 참석부

2016년도 제3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위원 참석부

2016. 4. 26.[화]

연번	소 속	직위(급)	성 명	서 명	비고
1	전자공학부	교 수	채 창 현		위원장
2	기획협력처	기획협력처장	이 승 희		부위원장
3	교 무 처	교무처장	이 재 원		
4	학 생 처	학생처장	방 대 석		
5	사 무 국	사무국장	이 용 학		
6	학 생 처	학생과장	김 종 필		
7	교 수 회	부회장	정 연 구		
8	교양교직과정부	교 수	최 낙 렬		
9	경영학과	교 수	구 정 호		
10	도 서 관	직 원	손 창 식		
11	정보전산원	직 원	이 정 희		
12	고분자공학과	재학생	서 명 성		
13	건축학과	재학생	유 명 창	.	
14	총동창회	사무국장	장 세 광		
15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회계사	홍 순 달		
간사	사 무 국	재무과장	배 효 근		

<첨부자료목록>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부의 및 가결안건	제1호안건 2016학년도 제1차 대학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제2호안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안 일부개정 규정안 제3호안건 2016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안	원안대로 가결
회 의 녹취록 전 문	제3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의녹취록	

<첨부자료>

1. 부의 및 가결안건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 개정 사유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재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심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변경함

2. 주요내용

- 매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지급대상, 예산, 지급시기, 지급제한 및 환수)은 재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하고, 영역별 지급기준은 심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함(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 : 재정·회계규정 제13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의 지급)
- 나. 합의 : 규정심의위원회(2016. 3. 14.), 교무회의(2016. 3. 15.)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전문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연도별 지급계획) 총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지급대상
2. 예산
3. 지급시기
4. 지급제한 및 환수

제8조의 제목 “연도별 지급계획”을 “영역별 지급기준”으로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포함한다)은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영역별 지급기준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로 한다.

제11조의 2항 “환수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8조의 연도별 지급계획에 명시한다”를 “환수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7조의 연도별 지급계획에 명시한다”로 한다.

제12조(기타) 중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부 칙 (2차 개정 0000.00.00. 규정 제00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금오공과대학교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규정 제·개정 2. 연도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각 영역별 지급기준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7조(연도별 지급계획) 총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지급대상 2. 예산 3. 지급시기 4. 지급제한 및 환수
제8조(연도별 지급계획) 해당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포함한다)은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영역별 지급기준) 해당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영역별 지급기준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비용을 환수한다. 1. 허위 실적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지급된 비용 2. 실적평가지 해당 영역의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선지급된 비용 3. 연구년, 퇴직,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선지급된 비용 4.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환수가 결정된 경우 ② 환수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8조의 연도별 지급계획에 명시한다.	제11조(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비용을 환수한다. 1. 허위 실적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지급된 비용 2. 실적평가지 해당 영역의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선지급된 비용 3. 연구년, 퇴직,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선지급된 비용 4.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환수가 결정된 경우 ② 환수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7조의 연도별 지급계획에 명시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제정 2015. 7. 30. 규정 제881호

1차 개정 2015. 8. 21. 규정 제884호

2차 개정 2016. 00. 00. 규정 제00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오공과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13조에 따라 금오공과대학교(이하 “본교” 이라 한다)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의 편성)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운영 원칙에 따라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전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의 범위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지급기준) 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담당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따른 실적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지급하여야 한다.

③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되며,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④ 매 회계연도마다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의 지급계획(제1항에 따른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이전 회계연도의 지급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과 비교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결산을 공개할 때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세입 대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편성된 예산 및 집행 비율을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⑥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는 개인별로 지급 명세를 작성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2 장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제4조(지급대상)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대상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한다. 다만, 휴직, 파견 및 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실적이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08.21.>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교직원의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④ 일반직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수지원팀장으로 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역할,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심의사항)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심사
2.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실적 심사 및 개인별 지급액 결정
3.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각 영역별 지급기준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7조(연도별 지급계획) 총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지급대상
2. 예산
3. 지급시기
4. 지급제한 및 환수

[전문개정 2016.00.00]

제8조(영역별 지급기준) 해당 회계연도의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영역별 지급기준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0.00>

[제목개정 2016.00.00]

제9조 삭제 <2015.08.21.>

제10조 삭제 <2015.08.21.>

제11조(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비용을 환수한다.

1. 허위 실적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지급된 비용

2. 실적평가지 해당 영역의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선지급된 비용
3. 연구년, 퇴직,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선지급된 비용
4.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환수가 결정된 경우

② 환수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7조의 연도별 지급계획에 명시한다. <개정 2015.08.21., 2016.00.00>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0.00>

부 칙(제정 2015.07.30. 규정 제88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5년의 경우에는 2015년 3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차 개정 2015.08.21. 규정 제88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5년의 경우에는 2015년 3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차 개정 2016.00.00. 규정 제00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6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2016. 4.

금오공과대학교
[교 무 처]

2016학년도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I. 지급근거

-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금오공과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13조

II. 2015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액

영역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교육	1,585,775	1,551,355	34,419	97.8
연구	2,312,455	2,264,634	47,821	97.9
학생지도	1,273,319	1,090,560	182,759	85.7
계	5,171,549	4,906,549	264,999	94.9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연구년 교수의 교육영역(교재개발 제외) 및 학생지도 영역 미지급
- 연구 및 학생지도 분야에서 C등급 발생
- 직원 학생지도 미 참여 인원 미지급

III. 2015년도 대비 2016년에 변경된 내용

□ 예산 현황(단위 : 천원)

지급대상	영역	2016년도	2015년도	증감액
전임 교원	교육영역	1,537,084	1,585,775	-48,691
	연구영역	2,138,010	2,312,455	-174,445
	학생지도영역	1,739,921	1,273,319	466,602
계		5,415,015	5,171,549	243,466

※ 예산증액 사유 :

- 교원 : 2016년도 전임교원 증원(9명)
- 직원 : 2015년 한 개 학기 예산 편성 → 2016년 두 개 학기 예산 편성

□ 평가지표

영역구분		2015	2016	비고
지급횟수		3회(8월 40%, '16.2월초 40%, '16.2월말 20%)	3~5회(4월 20%, 9월 40%, '17.2월 40%)	9월 및 2월 20%씩 구분
실적인정		연도말 실적 이월 불가	선택지표의 경우 2월 실적은 2017년에 평가(공통지표는 불가)	교육부 인정
기본연구결과보고서		양식 중 6. 연구결과물 내용 기재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부분을 2쪽 이상으로 자세히 기재 (연구결과물 기재 란은 삭제)	
교육영역	CQI제출	2학기 1과목 제출	1,2학기 전체과목 제출 (이론,실제교과목) ※CQI제출 제외 과목 1. 공동지도과목(팀티칭) 2. 실험·실습과목 3. 논문지도	교육부 지적사항
	대학원 논문지도		대학원생 지도학생 논문지도 : 학점당 0.5점	신설 지표
	연구년 교수 교재 개발비	2016.8월까지 연구유예 및 보고서 미제출자 중간보고서 제출 시 선지급	완성본 교재 제출시 지급 (2017.8월에 연구년이 종료되는 교수는 2017년 예산으로 지급) 단독저자만 인정하며, 역서는 인정하지 않음	교육부 지적사항 지원기준에 명시
연구영역	교외연구비수주	기본 500만원당 1점(500만원 초과 시 100만원당 0.2점)	기본 500만원당 1점(500만원 초과 시 100만원당 0.2점) ※ 최대 10점까지 인정	인정점수 제한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동일학회에서 1인 4개 과제 부터 적용	최대 3건까지 인정	
	기타 학술지 게재논문		비등재지(교내논문집 등)에 게재한 논문 1점/건	신설 지표
학생지도영역	취업지도 등		취업지도, 독서인증제, 독서토론지도, 현장실습지도, 경진대회수상 : 연간 최대 10점까지 인정	인정점수 제한
	대학원생 상담지도		대학원생 상담지도 : 건당 0.5점 원스톱서비스에 상담일지 작성 시 학기당 5건까지 인정	신설 지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참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참여 1. 특강: 건당 1점 2. 과학교실, 대학체험, 현장견학 진행: 건당 0.5점 3. 단순 프로그램 참여 : 건당 0.2점 * 1일 최대 2점까지 인정 * 연간 최대 10점까지 인정	신설 지표 (기획협력처 주관)

IV. 2016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1. 기본원칙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준수
-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영역별 활동을 포함한 계획서 제출
- 계획서의 실적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인별 차등 지급
- 비용 선지급금에 따른 환수 기준 명시

2.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 금오공과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중 '활동계획서' 및 '활동실적보고서 및 실적물'을 제출한 자
 - ※ 교직원 : 총장, 전임교원, 공무원(조교 포함), 대학회계직원(수입대체 제외)
- (지급 제외 대상자)
 - 휴가, 휴직, 파견, 신규임용, 직위해제, **정직 및 면직된** 자로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교육 및 학생지도 영역의 경우에 학기별 1월 미만, 연구영역의 경우에는 연 2월 미만인 자
 - ※ '실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71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등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
 - *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음
- (지급 제한 대상자)
 - 정년퇴직, 명예퇴직 대상 교직원은 퇴직 전 영역별 활동계획서와 영역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영역별 해당 비용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전액(기준액) 일시 지급함
 - 연구년제 교수의 경우 강의교재개발을 제외한 교육영역 및 학생지도 영역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함(단, 강의교재개발 및 연구영역에 대해서는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지급)

3. 지급 제한 및 환수

○ (처리방안) 지급 제한 및 환수 처리 방안

구 분	조 치	비 고
휴직, 직위해제 및 징계(정직 및 면직)	- 근무하지 않은 기간 실적 불인정	·공통지표(교육및학생지도) 실적은 근무기간 월할계산 지급 ·선택지표는 근무기간중 실적은 인정
보고서 제출기한 초과	- 최하등급 부여	·합당한 사유 시 재심의
보고서 미제출	- 선지급분 회수 - 잔여액 미지급	
실적물 허위제출	- 선지급분 전액 환수	·이의신청 제기 가능

- (전액환수)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영역에 지급된 비용 전액 환수 조치
 - 활동계획서 제출로 선지급분 수령 후 실적보고서(실적물) 미제출 시
 - 선지급분 수령 후 실적보고서(실적물) 제출 없이 본인의 원(願) 또는 중징계(해임, 파면)에 따른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 동일한 실적물에 대하여 이중 지급된 경우
- (환수유예)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적보고서(실적물)를 제출하지 못한 교직원의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해당 영역 선지급분에 대한 환수 조치를 유예 가능함
 - 실적보고서(실적물) 제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최대 2개월 연장)
 -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 (환수면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 (환수방안) 환수명령을 받은 교직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함
 - 환수금액 완납완료 시까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을 중지
 - 차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에서 환수금액 차감

4. 예산 및 교직원 현황

- 예산과목 : 대학회계/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비
- 총 예산 : 5,415,015천원

영역	구분	지원사업명	예산액	비고
교육	공통지표	강의개선활동지원비	1,149,500	
	선택지표	교육활동지원비	285,714	
	지정선택지표	교재개발비	70,000	
		특강및교육협약체결	11,870	
		영어강의지원비	20,000	
	계(A)	소계	1,537,084	
연구	공통지표	기본연구지원비(기본/정책)	510,600	
	선택지표	연구활동지원비	126,540	
	지정선택지표	정책연구과제수행비	52,870	
		대학학술연구비지원	1,200,000	
		연구논문게재 · 발표경비지원	200,000	
		연구과제신청장려금	12,000	
		학술행사지원	36,000	
	계(B)	소계	2,138,010	
학생 지도	공통지표	학생지도지원비	668,800	
	선택지표	학생지도활동비A(취업, 비교과)	167,200	
	지정선택지표	학생지도활동비B(취업, 비교과외)	903,921	
	계(C)	소계	1,739,921	
합계(A+B+C)			5,415,015	

- 지급대상 교직원 현황(2016.3.1. 기준)

구분	총장	전임교원	직 원				합계
			공무원	조교	대학회계직원 (수입대체 제외)	소계	
인원	1	220	76	26	81	183	404

5. 영역별 활동계획서 및 보고서(실적물) 심사 시기

구분		1학기	2학기	비고
교육영역	교육활동계획서	4월	9월	
	교육활동보고서	9월	2월	
	선택지표 이행실적		2월	
	지정선택지표 이행실적	9월	2월	
연구영역	연구활동계획서 +기본연구계획서	4월		
	연구활동보고서 +기본연구결과보고서		2월	
	선택지표 이행실적		2월	
	지정선택지표 이행실적	수시	수시	
학생지도 영역	학생지도활동계획서	4월	9월	
	학생지도활동보고서	9월	2월	
	선택지표 이행실적		2월	
	지정선택지표 이행실적	9월	2월	

6. 지급시기

월별	1학기 실적				2학기 실적				
	4월		9월		9월		2월		
구분	1학기 계획서 제출	심사 및 선급금 지급	실적 보고서 제출	심사 및 지급	2학기 계획서 제출	심사 및 선급금 지급	실적 보고서 제출	심사 및 지급	선택지 표평가 및 지급
교육	○	20%	○	20%	○	20%	○	20%	20%
연구	○	40%					○	40%	20%
학생 지도	○	20%	○	20%	○	20%	○	20%	20%

※ 학기별 공통지표 평가가 조기에 완료되는 경우 9월과 2월은 월초와 월말로 나누어 20%씩 지급할 수 있음

7. 평가집단

평가영역	평가점수 산출	비교집단	비고
교육	개인별 점수	대학전체	
연구	개인별 점수	대학전체	
학생지도	개인별 점수	대학전체	

8. 기타사항

- 평가기간을 감안하여 2017년 2월 실적 중 당해연도에 제출하지 못한 실적(선택지표만 해당)이 있는 경우 2017년 실적으로 평가함
 ※ 2016년 2월 16일 이후 실적(선택지표만 해당)은 2016년 실적으로 평가함
- 교원의 연구영역 및 학생지도 실적 중 출장비, 연구 경비 등이 지급된 건은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직원(조교 및 대학회계직원 포함)의 학생지도 활동은 직원의 포괄적 업무범위로 인정하되,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타지원금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9. 향후 추진 일정

- 재정위원회 심의 : 4월 말
- 2016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 교육부 제출(협의 및 예산승인 요청) : 4월 말
- 1차 선금금 지급 : 4월 말
- 교육부 검토 및 예산승인 : 5월 중
- 교육부 수정 요구 시 수정계획서 제출(예산 수정 시 재정위원회 재심의)

V. 2016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영역별 지급기준

1. 교육영역

□ 전체 예산의 영역별 반영 비율

평가영역	반영비율	비고
교육영역	전체 예산의 28.4%	

□ 교육영역 지급기준

구분	지원사업	예산(천원)	지원기준	지급기준액(천원)
공통 지표	강의개선 활동비	1,149,500	- 강의책임시간 준수 - 교과목 포트폴리오(CQI) 제출	충족 시 5,500
선택 지표	교육활동 지원비	285,714	- 학부강의평가점수 - 학부학생수강인원 - 대학원논문지도	실적에 따라 4등급(S,A,B,C)으로 구분하여 상대평가
지정 선택 지표	교재 개발비	70,000	연구년교수	200페이지 이상 시 5,000 1인 1과목(ISBN 등록) - 실적물(교재)은 심사하여 적격 판정시 지급 * [별첨] 교재개발지원기준
	특강 및 교육협약 체결	11,870	본부주관 특강 및 대외기관 교류협약체결 지급	- 특강 100명 이상 : 500 200명 이상 : 800 - 협약체결 : 건당 300
	영어강의 지원비	20,000	영어강의지원비 지원 지침에 따름	- 학기단위 지급 - 3학점 과목 250 - 2학점 과목 200
계		1,537,084		

□ 평가지표

구분		항목	평가방식	비고
의무 제출		교육계획서	공통지표 및 선택지표에 대한 교육계획 제출	
		교육실적 보고서	교육계획서에 따른 교육활동실적 제출	
평 가 항 목	공 통 지 표	강의개선활동 (책임시수/CQI)	- ¹⁾ 책임시수 이상 강의시 지급 (미달시 전액 미지급) - ²⁾ 교과목 포트폴리오(CQI) 제출 (이론 및 설계 전과목)	학사관리팀 공학교육 혁신센터
	선 택 지 표	① 학부 강의 평가 점수	- 4.5이상 5점, 4.0이상 4.5미만 4점, 3.5이상 4.0 미만 3점, 3.0이상 3.5미만 2점, 2.5이상 3.0미만 1점, 2.5미만 0점	교수지원팀
		② ³⁾ 학부 학생 수강 인원	- 1학점당 평균 수강인원 : 10명 미만 0점, 11~15명 1점, 16~20명 2점, 21~25명 3점, 26~30명 4점, 31명 이상 5점 ※ 평균수강인원 = $\frac{\sum \text{학점} * \text{수강인원}}{\text{총학점}}$	학사관리팀
		③ 대학원 논문지도	- 대학원 지도학생 논문지도 : 학점당 0.5점	대학원지원팀
	지 정 선 택 지 표	⁴⁾ 교재개발비	○ 지급대상 : 연구년교수 ○ 지급액 : 5,000천원/인	개별 제출
		특강강사료	○ 지급대상 : 본부, K-RC교육원 등에서 신 입생,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 는 경우 강사료 지원 ○ 지급액(1회당) - 참여학생 100명 이상 500천원 - 참여학생 200명 이상 800천원 ※ 특강료가 별도 지원되는 경우 제외	개별 제출
		교육관련 대외기관 교류 협약 체결 지원비	○ 지급대상 : 대학과 대외기관 간의 교육 관련 협약(국제교류, 연계교육과정, 자유 학기제 등) 체결 실적이 있는 경우 지급 ○ 지급액 : 협약 체결 건당 300천원	개별 제출
		영어강의지원비	○ 영어강의지원비(학기당) - 3학점 250천원 - 2학점 200천원	학사관리팀

<적요>

- 1) 책임시수 미달 교원 예외 인정 : 보직교원 책임시수 면제 및 폐강 등으로 인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책임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함
- 2) 교과목 포트폴리오(CQI) : 학기에 개설한 이론 및 설계 전체과목에 대하여 제출
※ CQI 제출 제외 교과목 : 공동지도과목(팀티칭), 실험·실습과목, 논문지도
- 3) 학생 수강인원 : 학부 과목 중 순수 실험, 원격강의 및 종합설계는 제외함
- 4) 교재개발비 : 200페이지 이상, ISBN등록 의무(* 세부사항 : [별첨] 교재개발지원기준)

□ 선택지표 : 학기별 실적을 합산하여 차등지급

선택지표 점수별 지급금(2016년도)

등급	S	A	B	C
인원	상위20%	기준(60%)	하위20%	2점 미만
지급기준	1,644,000 ($\alpha \times 1.2$)	1,370,000 (α)	1,096,000 ($\alpha \times 0.8$)	0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 ② → ③(순으로 고득점자)
- S~B등급 인원 산출 시 C등급 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함
- 1개학기 실적만 있는 경우(2학기 신입교원, 학기 연구년) 지급방법
※ 점수산출 = 취득점수 $\times$ 2 ※비용지급= 해당등급 1/2 지급

□ 평가 및 지급시기

지급(시기)	1차선급금 (4월)	2차실적급 (9월)	3차선급금 (9월)	4차실적급 (2월)	5차실적급 (2월)
기준금액	6,870,000원				
공통지표	20%	20%	20%	20%	20%
평가근거	○ 1학기 교육계획서	○ 1학기 이행실적	○ 2학기 교육계획서	○ 2학기 이행실적	○ 교육실적(2016년도)
평가방법 및 지급방법	- 1학기 교육계획서 제출자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심사후 지급	- 1학기 공통지표 달성도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사후 지급	- 2학기 교육계획서 제출자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심사후 지급	- 2학기 공통지표 달성도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사후 지급	- 1, 2학기 선택지표 실적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사 후 지급
확인자료	- 1학기 교육계획서	- 강의책임시간 준수 - 교과목포트폴리오(CQI) 제출	- 2학기 교육계획서	- 강의책임시간 준수 - 교과목포트폴리오(CQI) 제출	- 강의평가점수 - 학부생 수강인원 - 대학원논문지도

○ 평가지급률

구분	지급비율	평가항목
공통지표	80%	교육계획서, 교육실적 보고서, 강의개선활동
선택지표	0~20%	① ~ ③ 항목

□ 교육영역 평가항목별 세부 내용

1. 공통지표 : 학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학기 초 활동계획서제출, 학기 말 결과보고서제출로 실적을 인정한다.
 - 가. 책임시수 : 해당 교원이 담당한 강좌 중 계절학기 및 계약학과를 제외한 정규강좌의 연간 학점수를 말하며, 매 학기 책임시수 미달 시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시수감면(보직교원 등) 및 폐강 등으로 인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 나. 교과목포트폴리오(CQI)제출 : 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이 인정한 실적에 한하며, 매 학기 중 개설된 정규강좌 이론 및 설계 전 과목에 대한 CQI를 제출 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한다. 단, 공동지도과목(팀티칭), 실험·실습과목, 논문지도과목은 제외 한다
2. 선택지표 : 학년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학년 초 활동계획서제출, 학년 말 결과보고서제출로 실적을 인정한다.
 - 가. 학부강의평가점수 : 매 학기 학부강의평가 대상 전 과목을 평균하여 인정한다.
 - 나. 학부학생수강인원 : 매 학기 개설된 정규강좌 전 과목의 수강인원을 학점 당 평균하여 인정한다. 단, 순수실험, 원격강의 및 종합설계과목은 제외한다.
 - 다. 대학원 논문지도 : 매 학기 대학원 논문지도 개설 학점으로 실적을 인정한다.
3. 지정선택지표
 - 가. 교재개발비 : 연구년 교원에 한하며 세부사항은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비용 지원 기준**”에 의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 나. 특강강사료 : 신입생,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여 대학본부 및 K-RC교육원 등에서 인정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특강료가 별도 지원되는 경우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 교육관련 대외기관 교류 협약 체결 지원비 : 대학과 대외기관 간의 교육관련 협약(국제교류, 연계교육, 자유학기제 등)에 한하며, 해당 부서에서 인정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라. 영어강의지원비 : “**전임교원 전공과목 영어강의지원비 지급 지침**”에 의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비용 지원 기준

1. 지원대상자 : 2016.3.1.~2017.2.28까지 연구년 중인 교수를 대상으로 한다.
2. 교재의 범위 : 전공분야에 한하며, 개발된 교재는 학생의 정규강좌 또는 비정규강좌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3. 지원절차
 - 교육영역 활동계획서에 교재개발을 선택하고 개발 내용을 기재
 - 붙임 양식의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비용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 심사후 대상자 확정
4. 교재의 형식 및 규격
 - 단독 저자인 경우만 인정하며, 역서는 인정하지 않음
 - A4용지 기준 200매 이상, 글자크기 12포인트 이하, 쪽번호 삽입, 한글파일 형태, 그림·사진의 지나친 삽입 지양
5. 비용지급
 - 교재개발비 지원 금액은 금5,000,000원으로 한다.
 - 교재개발 비용은 2017.2월말까지 지급하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6. 의무사항
 - 완성된 교육교재는 ISBN을 부여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개발된 교재는 전공분야 정규강좌 및 비정규강좌에 교재로 활용하여야 한다.
7.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교육교재 개발 종료 시 교육교재 3부, 최종결과보고서(별지 2호)를 교무처에 제출
 - 연구년 승인 교수의 연구년 기간에 따른 결과물 제출 시기

연구년기간	교재개발기간	교재개발비(천원)	지급일	교재제출기한	비고
2016.3~2017.2	2016.3~2017.2	5,000	2017.2.	2017.2	완성본 제출시 지급
2016.9~2017.8	2016.9~2017.8	5,000	2017.2 또는 2017.9	2017.9	완성본 제출시 지급
2017.3~2018.2	대상아님				2017년 신청

8. 심사
 - 개발된 교재는 규격, 전공분야 활용도 등을 심사하여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교재개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교재개발의 적격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9. 별첨
 - [별첨1호]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비용 지원신청서
 - [별첨2호] 분야 교육교재 개발 최종 결과보고서

□ 전임교원 전공과목 영어강의지원비 지급 지침

1. 목적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추어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영어 능력 신장을 위하여 전공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는 전임교원에 대하여 영어강의 지원비를 지급하고자 함.

2. 영어강의 지원 대상

가. 지원 과목 : 해당학기 개설 강좌 중 전공과목에 한함(교원별 1강좌 이내)

나. 지원 대상 : 모든 학부(과)의 전임교원

3. 지원비 지급 금액 및 방법

가. 지원 금액 및 방법 : 최초시행의 교재개발비 및 강의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며, 다음 학기에도 계속 강의할 경우 강의료만 지급함.

시기별	구 분	2학점	3학점 이상	비 고
최초 강의시	강의료	200,000원	250,000원	
계속 강의시	강의료	200,000원	250,000원	

☞ 전임교원 영어강의 학기별 1강좌 이상 개설가능하나, 영어강의지원비는 학기별 1강좌 지원 함.

☞ 지급 후 해당 학기에 퇴직, 전출, 해외장기연수 등 강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지원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

나. 지급 시기 : 학기 종료 후 지급.(단,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예산 부족 시에는 지원액을 조정함.)

4. 제출 서류

가. 영어 강의 지원비 지급 신청서 1부.

나. 강의계획서 1부(한글로 작성하되, 영어로 강의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다. 영어 강의 교재 인쇄물 1부.

5. 적용 시기 :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2. 연구영역

□ 전체 예산의 영역별 반영 비율

평가영역	반영비율	비고
연구영역	전체 예산의 40.4%	

□ 연구영역 지급기준

구분	지원사업	예산(천원)	지원기준	지급기준액(천원)
공통 지표	기본연구 지원비	510,600	○ 기본연구과제 또는 정책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 2,300
선택 지표	연구활동 지원비	126,540	○ 교외연구비수주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 저서(전문도서출판) ○ 특허(실용신안)등록 ○ 지식(디자인)재산권 등록 ○ 기술이전	○ 기준액 : 570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지정 선택 지표	정책연구비	50,000	○ 정책과제 수행비	○ 팀 또는 개별 수행 - 팀당 500만원 한도
		2,870	○ 재정지원사업 참여지원비	
	대학학술 연구비 지원	1,200,000	교내일반과제, 중점과제, 지정연구과제, 신입교수 연구비로 구분	○ 일반과제 7,000 ○ 중점과제 10,000 ○ 지정과제 : 10,000 ○ 신입교수 10,000
	연구논문 게재·발 표경비지 원	200,000	연구논문 게재·발표경비	○ 게재경비 : 등재지 및 저 자수에 따라 60~100,000 ○ 발표경비 - 국외 1,000 - 국내 100
	연구과제 신청장려 금	12,000	한국연구재단에 신규과제 (연구비 총액 3천만원 이상) 가 선정된 경우 지원	○ 건당 300
	학술행사 지원	36,000	학회참가경비	
계		2,138,010		

□ 평가지표

구분	항 목		평가방식		기준자료
의무 제출	연구계획서 제출시		공통지표, 선택지표에 대한 연구활동계획 제출		개별 제출
	연구실적보고서 제출시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활동실적 제출		개별 제출
공통 지표	기본연구비		기본연구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심사하여 지급		개별 제출
선택 지표	①교외 연구비 수주		기본 500만원당 1점(500만원 초과 시 100만원당 0.2점)		산학협력단 (기간중입력 자료) 또는 개별제출
	②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1점/건(최대 3건) *별도의 교비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③저서(전문도서출판)		5점/건 *개정판(2,3판 등) 1점/건 *번역서 1점/건		
	④특허(실용신안)등록		3점/건		
	⑤지식(디자인)재산권		2점/건		
	⑥기술이전		50만원당 1점		
	⑦기타학술지 논문게재		비등재지(교내논문집 등)에 게재한 논문 1점/건		
지정 선택 지표	정책연구비		대학 현안 및 정책 과제 연구비		학생처
			재정지원사업 참여 지원비		사업 주관부서
	다년 과제	교내일반과제	건	700만원	산학협력단 자체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중점연구과제	건	1,000만원	
		신임교수연구과제	건	1,000만원	
	연구논문 게재경비		건	6~10,000만원	
	국내 학술대회 발표		건	4회차부터 10만원/건	
	국외 학술대회 발표		건	100만원	
	국내 학회 참가		건	실비정산	
	대외 연구과제 선정		건	30만원	

<적요>

- 기본연구 : 기준에 발표 또는 선정된 과제(교내 및 교외)는 불가
- 정책연구 : 정책과제의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에 따름
- 재정지원사업 참여 : 기본계획 수립시 역할, 담당업무, 지원액이 명시되어야 함(다른 예산으로 지급되는 경우 지급 불가)
- 국내학술대회발표 : 산학협력단에서 발표경비를 지원 받지 않은 실적 중 3건까지만 인정한다.

□ 선택지표 점수별 지급금(학년별)

등급	S	A	B	C
인원	상위20%	기준(60%)	하위20%	1점 미만
지급액(원)	684,000 ($\alpha \times 1.2$)	570,000 (α)	456,000 ($\alpha \times 0.8$)	0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순으로 고득점자)
- S~B등급 인원 산출 시 C등급 인원을 제외한 비율

○ 비용지급률

구분	지급비율	평가항목
공통지표	80%	연구계획서, 연구실적보고서, 기본연구계획서, 기본연구결과보고서
선택지표	0~20%	① ~ ⑦ 항목

□ 평가 및 지급시기

지급(시기)	1차평가 (4월)	2차평가 (2017.2월)	3차평가 (2017.2월)
기준금액	2,870,000원		
공통지표	40%	40%	20%
평가근거	연구계획서	연구실적보고서 및 기본연구결과보고서	선택지표실적
평가방법 및 지급방법	- 연구계획서 제출자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 연구실적보고서 및 기본 연구결과보고서에 따라 심사위원회 평가 후 차등 지급	- 선택지표 실적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사 후 차등지급
확인자료	- 연구계획서	- 연구활동보고서 - 기본연구결과보고서	- 교외연구비수주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 저서(전문도서출판) - 특허(실용신안)등록 - 지식(디자인)재산권 - 기술이전 - 기타학술지논문게재

□ 연구영역 평가항목별 세부 내용

1. 공통지표 : 학년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학년 초 활동계획서제출, 학년 말 결과보고서제출로 실적을 인정한다.
 - 가. 기본연구비 : 기본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실적을 인정한다. 기본연구계획에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내용, 연구결과, 활용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연구결과보고서에는 연구의 개요, 연구의 내용, 연구목표 달성도 등이 포함된 A4 2매 이상의 연구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 기존 발표과제, 교내연구과제 및 기타 재원으로 수행 중인 과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기본연구계획의 변경은 연구결과보고서 제출기한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선택지표 : 학년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학년 초 활동계획서제출, 학년 말 결과보고서제출로 실적을 인정한다.
 - 가. 교외연구비수주 : 산학협력단에서 인정한 실적에 한하며, 연구과제, 용역과제, 기술자문, 산업자문 등의 항목에서 실적인정 기간 중 입금된 금액으로 최대 10점까지만 인정한다.
 - 나. 국내/외 학술대회발표 : 산학협력단에서 인정한 실적에 한하며, 산학협력단에서 발표경비를 지원 받지 않은 실적 최대 3건까지만 인정한다. 단, 산학협력단의 발표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실적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경비 이중지급 금지)
 - 다. 저서(전문도서출판) : 산학협력단에서 인정한 실적에 한하며, 개정판 및 번역서는 건당 1점으로 한다.
 - 라. 특허(실용신안), 지식(디자인)재산권 등록 : 산학협력단에서 인정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마. 기술이전 : 산학협력단에서 인정한 실적에 한하며, 실적인정 기간 중 입금된 금액으로 최대 10점까지만 인정한다.
 - 바. 기타학술지 논문게재 : 산학협력단에서 인정한 실적에 한하며, 게재논문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 인정한다.
3. 지정선택지표 : 산학협력단 자체 지급 기준에 따라 실적을 인정한다.

3. 학생지도영역

□ 전체 예산의 영역별 반영 비율

평가영역	반영비율	비고
학생지도 분야	전체 예산의 31.2%	

□ 학생지도영역 지급기준

구분	지원사업	예산(천원)	지원기준	지급기준액(천원)
공통 지표	학생면담실적	668,800	○ 학생면담실적	○ 학기당 15회 이상 상담 시(학년) : 3,200
선택 지표	교육활동 지원비	167,200	○ 학생취업활동 ○ 학생비교과활동지원	○ 기준액 : 800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지정 선택 지표	교육활동 지원비	903,921	○ 학생활동지원	○ 1회 기준액 : 100 ○ 지도실적에 따라 지급
계		1,739,921		

□ 평가기준

구분	항목	평가방식	제출자료
의무 제출	계획서 제출	- 공통지표 및 선택지표에 대한 학생지도 계획서 제출	개별 제출
	보고서 제출	- 학생지도계획서에 따른 활동실적 제출 (첨부 : 학생상담 리스트 화면 출력)	개별 제출
공통 지표	학부학생면담	- 학부학생면담 학기당 15회이상 : 1,600천원(학기) (첨부 : 학생상담 리스트 화면 출력)	개별제출
선택 지표	학생취업활동	① 학생취업지도(취업지원본부에서 인정하는 실적) : 건당 1점 * 연간 최대 10점까지 인정	취업지원 본부
	학생 비교과 활동 지원	② 독서인증제 독후감 평가 : 평가건수당 0.5점 * 연간 최대 10점까지 인정	도서관

구분	항목	평가방식	제출자료
선택 지표	학생 비교과 활동 지원	③ 독서토론지도 : 지도학생수 11명 이상 3점, 5~10명 2점, 1~4명 1점 * 연간 최대 10점까지 인정	
		④ 현장실습지도: 건당 1점 * 연간 최대 10점까지 인정	현장실습 지원센터
		⑤ 지도학생의 외부 경진대회 수상/참가실적 : 수상 건당 3점, 참가 건당 1점 * 연간 최대 10점까지 인정	개별제출
		⑥ 대학원생 상담지도 : 건당 0.5점 *원스톱서비스에 상담일지 작성 시 학기당 5건 연간 최대 5점까지 인정	개별제출
		⑦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참여 - 특강: 건당 1점 - 과학교실, 대학체험, 현장견학 진행: 건당 0.5점 - 단순 프로그램 참여 : 건당 0.2점 * 1일 최대 2점 / 연간 최대 10점까지 인정	기획협력처
지정 선택 지표	학생활동지원	“학생지도 실적 인정 기준” [별표1]의 항목 참 조 : 1점당 100,000원	일지 및 결과보고서

□ 선택지표 점수별 지급금(학년별)

등급	S	A	B	C
인원	상위20%	60%(기준)	하위20%	4점 미만
지급액(원)	960,000 ($\alpha \times 1.2$)	800,000 (α)	640,000 ($\alpha \times 0.8$)	0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②→③→④→⑤→⑥→⑦(순으로 고득점자)
- S~B등급 인원 산출 시 C등급 인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산정함
- 1개학기 실적만 있는 경우(2학기 신입교원, 학기 연구년) 지급방법
※ 점수산출 = 취득점수×2 ※비용지급= 해당등급 1/2 지급

○ 비용지급률

구분	지급비율	평가항목
공통지표	80%	학생지도활동계획서, 학생지도활동보고서, 학생면담 실적(학생상담 리스트 화면 출력 첨부)
선택지표	0~20%	① ~ ⑧ 항목

□ 평가 및 지급시기

지급(시기)	1차 (4월)	2차 (9월)	3차 (9월)	4차 (2017.2월)	5차 (2017.2월)
기준금액	4,000,000원				
공통지표	20%	20%	20%	20%	20%
평가근거	1학기 활동계획 서	1학기 실적보고 서	2학기 활동계획 서	2학기 실적보고 서	2016년 선택지표실적
평가방법 및 지급방법	- 1학기 학 생지도활 동계획서 심사위원 회 심사 후 지급	- 1학기 학 생지도활 동보고서 심사위원 회 심사 후 지급	- 2학기 학 생지도활 동계획서 심사위원 회 심사 후 지급	- 2학기 학 생지도활 동보고서 심사위원 회 심사 후 지급	- 선택지표 실적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사 후 차등지급
확인자료	- 1학기 활 동계획서	- 1학기 실 적보고서	- 2학기 활 동계획서	- 2학기 실 적보고서	- 학생취업지도 - 독서인증제 독후감 평가 - 독서토론지도 - 현장실습지도 - 지도학생의 외부경진 대회 수상 - 학생지도 실적 - 대학원생 상담지도 - 자유학기제 프로 그램 참여

□ 학생지도영역 평가항목별 세부 내용

1. 공통지표 : 학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학기 초 활동계획서제출, 학기 말 결과보고서제출로 실적을 인정한다.
가. 학부학생 면담실적 : 학부학생 면담실적으로 매 학기 15회 이상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며, 온라인상담, 직접상담, 수강신청상담을 실시하여 원스톱서비스에 면담실적을 입력하고 학기말 면담리스트를 출력하여 제출 한 경우 인정한다.
2. 선택지표 : 학년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학년 초 활동계획서제출, 학

년 말 결과보고서제출로 실적을 인정한다.

가. 학생취업활동 : 취업지원본부에서 인정한 실적에 한하며, 최대 10점까지만 인정한다. 단, 취업지원본부의 활동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실적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경비 이중지급 금지)

나. 독서인증제 독후감평가, 독서토론지도 : 도서관에서 인정한 실적에 한하며, 지표 당 연간 최대 10점까지만 인정한다.

다. 현장실습지도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인정한 실적에 한하며, 최대 10점까지만 인정한다. 단, 현장실습지원센터의 활동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실적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경비 이중지급 금지)

라. 지도학생의 외부 경진대회 수상/참가 실적 : 지도교수란 각 학부(과)의 지도교수가 아닌 실제 경진대회 지도교수를 의미하며, 수상의 경우 실적보고서 및 수상증빙(상장 등), 참가의 경우 실적보고서 및 참가증빙(참가증명서 및 사진 등)을 제출 한 경우 연간 최대 10점까지만 인정한다. 또한, 공동지도의 경우에도 실적을 인정한다. 단, 학술대회 및 논문 경진대회의 경우 수상만 인정한다.

마. 대학원생 상담지도 : 온라인상담, 직접상담을 실시하여 원스톱서비스에 면담실적을 입력하고, 학년말 면담리스트를 출력하여 제출 한 경우 학기 당 5건, 연간 최대 5점까지만 인정한다.

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참여 : 기획협력처에서 인정한 실적에 한하며, 일 최대 2점, 연간 최대 10점까지만 인정한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계획에는 목적, 기간 및 참여자의 역할이 포함되어야 하며, 역할 분장이 되어있는 전임교원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단,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 관련한 활동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실적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경비 이중지급 금지)

3. 지정선택지표 : “학생지도 실적 인정 기준”에 따라 실적을 인정한다.

□ 지정선택지표 “학생지도 실적 인정 기준”

항 목	운영내용	인정점수(연간)	비 고
□ 기숙대학 프로그램 운영/지도	○ 교과 : RC생활의 이해 - 1건(회)당 1점, 학기당 15점 이내 ※ 강사로 위촉되어 특강한 경우 1건(1회)당 2점	연간 최대 30점	
	○ 비교과 : 봉사, 예술, 인문행사 등 지도한 실적 - 1건(회)당 1점, 학기당 15점 이내	연간 최대 30점	
□ K-CDP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	○ K-CDP 프로그램 운영관리 - 1학년 학생을 대상(일정한 인원)으로 역량 진단·개발·피드백 제공 등 일정한 기간 지도한 실적 - 학기당 15점 인정 - 학부(과) 공무원 조교 일부 참여 - 교직원인 관리하는 학생 인원은 K-CDP센터에서 배정(100명~200명)	연간 최대 30점	
□ 학생상담/지도1	○ 학생 멘토, 멘티 운영 -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 멘티 구성 후 대학생활, 학사, 장학, 진로 등 일정한 기간 지도한 실적 - 1대 6인미만, Team 대 Team 가능 - 1건(회)당 1점, 학기당 12회 이상 시 15점 인정 【동일인 대상 상담은 15건(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멘티 선발서류(필수), 관련공문, 실시기관 확인서, 결과보고서, 사진 등 증빙서류	연간 최대 30점	
	○ 기초 및 전공학문(교과목), 학사 등 상담, 지도한 실적 - 1건(회)당 1점, 학기당 15점 이내	프로그램별 연간 최대 30점	2시간기준 1점 (단, 4시간이상 1.5점)
	○ 도서 인문소양(인성) 함양을 지도한 실적 - 1건(회)당 1점 - 프로그램별 월1회 시행	연간 최대 30점	2시간기준 1점 (단, 4시간이상 1.5점)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불법SW근절 등 지도한 실적 - 1건(회)당 1점 - 프로그램별 월1회 시행	프로그램별 연간 최대 30점	2시간기준 1점 (단, 4시간이상 1.5점)
	○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 등 안전교육 지도한 실적 - 1건(회)당 1점 - 프로그램별 월1회 시행	프로그램별 연간 최대 30점	2시간기준 1점 (단, 4시간이상 1.5점)
	○ 성희롱, 성폭력 예방, 장애학생 보호활동 등 안전 교육 및 지도한 실적 - 1건(회)당 1점 - 프로그램별 월1회 시행	프로그램별 연간 최대 30점	2시간기준 1점 (단, 4시간이상 1.5점)
	○ 실험실안전관리, 재난대비체험 실습 등 상담, 지도한 실적 - 1건(회)당 1점 - 프로그램별 월1회 시행	프로그램별 연간 최대 30점	2시간기준 1점 (단, 4시간이상 1.5점)
	○ 문화예술(갤러리) 체험 상담/지도한 실적 - 참여대상 : 오프닝행사시 작품 설명에 참가하여 사전에 지식을 습득한 교직원 - 1건(회)당 1점 - 월1회 시행	프로그램별 연간 최대 30점	2시간기준 1점 (단, 4시간이상 1.5점)
	○ 사진전시회 상담/지도한 실적 - 1건(회)당 1점 - 월1회 시행		
	○ 전공·취업·창업EXPO 등 관련행사 지도한 실적 - 1건(회)당 1점 - 관련부서 또는 학부(과)의 계획에 따라 시행(수시)	프로그램별 연간 최대 30점	2시간기준 1점 (단, 4시간이상 1.5점)

항 목	운영내용	인정점수(연간)	비 고
	○ 취업·창업 상담 및 지도(미취업졸업자포함)한 실적 - 1건(회)당 1점 - 관련부서 또는 학부(과)의 계획에 따라 시행(수시) ※ 강사로 위촉되어 특강한 경우 1건(1회)당 2점		
	○ 교직원인 현장실습교육과정 기관(기업) 발굴한 실적 - 1건(회)당 2점 - 실시 기관(기업) 관련공문 및 확인서, 일지 등 증빙서류 ○ 현장실습 현장지도한 실적 - 학생들의 공모전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지도하여 공헌한 실적 - 1건(회)당 1.5점 - 실시 기관(기업) 관련공문 및 확인서, 일지 등 증빙서류	프로그램별 연간 최대 30점	
	○ 학생 공모전 지도한 실적 - 1건(회)당 1.5점 - 실시 기관 관련공문, 공모전 참가 확인서 등 증빙서류	프로그램별 연간 최대 30점	
□ 학생상담/지도2 (외국인학생)	○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1대1 또는 1대 Team 결연을 통해 대학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제공한 실적 - 1건(회)당 1점 - 학기 기준 8회이상 10점 인정 【동일인 대상 상담은 10건(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멘티 선발서류(필수), 관련공문, 실시기관 확인서, 결과보고서, 사진 등 증빙서류	프로그램별 연간 최대 20점	
	○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사상담, 문화유산·전통시장 체험 등을 지도한 실적 - 1건(회)당 1점 인정(교외지도는 1.5점) - 멘티 선발서류(필수), 관련공문, 실시기관 확인서, 결과보고서, 사진 등 증빙서류	프로그램별 연간 최대 20점	2시간기준 1점 (단, 4시간이상 1.5점)
	○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지도, 스터디활동 지원 등을 지도한 실적 - 1건(회)당 1.5점 - 멘티 선발서류, 관련공문, 실시기관 확인서 결과보고서, 사진 등 증빙서류	프로그램별 연간 최대 20점	
□ 학생안전지도	○ 대동제, 공학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지도한 실적 - 행사기간 전,후일 포함 각 5일 실시 - 1회(건) 1점 인정(2시간 기준) ※ 휴일 및 야간 4시간 이상은 2점 인정	프로그램별 연간 최대 15점	2시간기준 1점
	○ 학생 체육대회 행사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지도한 실적 - 1회(건) 1점 인정	프로그램별 연간 최대 20점	2시간기준 1점 (단, 4시간이상 1.5점)
	○ 교내 관생(기숙사) 생활안전 지도한 실적 - 1회(건) 1점 인정 - 월1회 시행 - 상시점검 불가(일일점검 등)	프로그램별 연간 최대 30점	2시간기준 1점 (단, 4시간이상 1.5점)
	○ 신학기 초, 시험기간 중 교내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지도한 실적 - 1회(건) 1점 인정 - 상시점검 불가(매일점검 등) - 학생처 시행	프로그램별 연간 최대 30점	2시간기준 1점 (단, 4시간이상 1.5점)

항 목	운영내용	인정점수(연간)	비 고
□ 입장지도	○ 교외 봉사활동, MT, 수련회, 국토대장정 등의 입장지도가 필요한 학생참여 행사에 학생을 인솔하고 지도한 실적 - 1일당 1.5점 인정(숙박을 할 경우 숙박당 추가 1점 인정) - 국토대장정, 국토종주 행사 등 장기적으로 입장 지도하는 행사는 최대20점 인정	프로그램별 연간 최대 30점	
	○ 학생대상 프로그램 및 행사 등의 준비, 진행, 안전관리, 정리활동 등을 지도한 실적 - 1회(건) 1점 인정 - 관련부서 또는 학부(과)의 계획에 따라 시행(수시)	프로그램별 연간 최대 20점	2시간기준 1점 (단, 4시간이상 1.5점)
□ 동아리지도	○ 일반동아리, 취업, 창업동아리, 전공,재능활용 등 지도한 실적 - Team 대 Team 또는 1대 Team지도 - 1회(건) 1점 인정	프로그램별 연간 최대 20점	2시간기준 1점 (단, 4시간이상 1.5점)
□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	○ 실험, 실습 등 학생체험활동을 지원, 지도한 실적 - 과학교실, 대학체험, 현장견학 등 - 1회(건) 1점 인정(교외지도는 1.5점) ※ 숙박을 할 경우 숙박당 추가 1점 인정 - 관련부서 또는 학부(과)의 계획에 따라 시행(수시)	프로그램별 연간 최대 20점	
	○ 프로그램 홍보, 안내 활동을 지도한 실적 - 1회(건) 1점 인정	프로그램별 연간 최대 20점	2시간기준 1점 (단, 4시간이상 1.5점)

○ 실적인정 기준

- 개인별 실적은 해당부서의 공문·일지, 결과보고서 등 실제 참여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 인정기준
 - 1점당 100,000원 (일과 중에는 개인별 1일 1회만 인정)
 - 개인별 1일 최대 2개 프로그램/행사 참여 가능
- 인정점수(연간)는 개인이 참여한 프로그램별로 연간 인정받을 수 있는 점수임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등과의 병급

- 출장여비 : 학생지도 관련 출장이 아니며, 일과 중 복귀 시 일과 후 프로그램/행사 참여 가능(관내출장의 경우, 프로그램/행사 시간과 미충복 시 일과 중 참여도 가능)
- 초과근무수당
 - 학생지도 프로그램/행사 관련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
 - 프로그램/행사를 일과 중에 참여 시 초과근무 가능
(단, K-CDP프로그램 참여직원은 초과근무 불가)
- 외부기관 행사 참여 : 행사 주최측으로부터 참여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실적 인정 불가

○ 프로그램 실시 방법

- 프로그램 운영은 시행부서장 책임하에 실시
- 프로그램 시행(시행부서) : 시행부서 내부결재 등 → 교직원 공모(전체공모 또는 일부공모 등의 방법) → 공모 확정 → 공모 결과 안내 → 프로그램 시행 →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2016년도 교육영역 활동계획서

성명	소속	직급	연락처	교내	
				핸드폰	
				이메일	

비고	주요활동 ※ 해당영역에 체크 및 작성	
공통지표	강의개선 활동	학기별 강의책임시간 준수 여부 및 교과목 포트폴리오(CQI) 이행 계획을 작성
선택지표	☐ 학부강의 평가점수	학부 강의에 대한 계획 작성
	☐ 학생수강 인원(학부)	학기별 학생 수강인원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
	☐ 대 학 원 논문지도	대학원생에 대한 논문지도 계획 작성
지정선택 지표	☐ 교재개발 비	교재개발계획을 작성(연구년교원)
	☐ 특강	본부 또는 K-RC교육원 주관 학생대상 특강 계획 기재
	☐ 교육관련 대 외 기 관 교류협력체 결	대학과 대외기관 간 교육관련 교류협력 협력 체결 계획 기재
기타	기타 교육 영역 관련하여 추가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위와 같이 2016년도 교육영역 활동계획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16년도 교육영역 활동보고서

성명	소속	직급	연락처	교내	
				핸드폰	
				이메일	

비고	주요활동 ※ 해당영역에 체크 및 작성	
공통지표	강의개선 활동	학기별 강의시간 시간 및 교과목 포트폴리오(CQI) 이행 실적을 작성
선택지표	☐ 학부장의 평가점수	학부장의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기재
	☐ 학생수강 인원(학부)	학기별 학생 수강인원 기재
	☐ 대 학 원 논문지도	지도학생에 대한 논문지도 실적 기재
지정선택 지표	☐ 교재개발 비	교재개발결과를 기재
	☐ 특강	본부 또는 K-RC교육원 주관 학생대상 특강 실적 기재
	☐ 교육관련 대 외 기 관 교류협력체 결	대학과 대외기관 간 교육관련 교류협력 협력 체결 실적 기재
기타	기타 교육 영역 관련하여 추가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위와 같이 2016년도 교육영역 활동실적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별첨 1]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비용 지원신청서

			관리번호	
교 재 명			관련 강의명	
개발책임자	성 명			
	소 속		직 급	
개 발 경 비	원	개발기간	(개월)	
본인은 2016년도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비용 지원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별첨 교재개발 수행 계획서 1부. 2016 년 월 일 개 발 책 임 자 :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별첨2]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수행계획서

1. 교재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2. 교재개발 참여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전공분야	연구년 기간

3. 교재개발 내용

4. 활용방안

예:○○○학부(과) 2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의 강의교재로 활용

5. 추진 일정

구 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6. 소요예산

지 출 항 목	금 액 (원)	산 출 내 역
교재집필비	5,000,000	

* 교재개발 개발책임자는 정규강좌 개설 또는 비정규강좌의 교육과정 등에 교재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 교육교재 개발 종료 시 개발 책임자는 교육교재 5부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발된 교육교재에는 “본 교육교재는 2016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원을 받아 개발된 교재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첨 4]

전공분야 교육교재 개발 결과보고서

1. 교재개발의 목적

2. 교재개발 참여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전공분야	연구년 기간

3. 교재개발 내용

-
- * 교재개발 개발책임자는 정규강좌 개설 또는 비정규강좌의 교육과정 등에 교재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 * 교육교재 개발 종료 시 개발 책임자는 교육교재 5부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개발된 교육교재에는 “본 교육교재는 2016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원을 받아 개발된 교재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2016년도 연구영역 활동계획서

성명	소속	직위	연 락 처	교내	
	학부(과)			핸드폰	
				이메일	

※ 계획중인 주요활동 해당영역을 체크하고 활동계획 내용을 작성

주요 활동		활동 계획	
공통 지표	기본연구 (정책연구)	국문	연구명 기입
		영문	/
선택 지표	☐ 교외 연구과제 수행	예) 이공계기초연구과제(연구재단, 50,000천원) 신청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예) 대한공학회 논문 발표 등 논문 3편 발표	
	☐ 저서(전문도서출판)	예) 저술 계획	
	☐ 특허(실용신안) 등록	예) 특허 몇 건 등록	
	☐ 지식(디자인)재산권	예)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 기술이전	예) 보유특허(10-00000) 이전 (삼성전자, 50,000천원) 노우하우 이전(LG전자, 50,000천원)	
	☐ 기타학술지 논문 게재	예) 00논문집에 논문 2편 게재	
기타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위와 같이 2016년도 연구영역 활동 계획서를 붙임과 함께 제출합니다. 붙임 : 기본연구 계획서 1부.			
		2016년	월 일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붙임1>

기본연구계획서

구분	내 용
연구명	국문 : 영문 :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표 및 내용	
추진 전략 및 방법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기타 사항	

<별지 제4호 서식>

2016년도 연구영역 활동보고서

성명	소속	직위	연 락 처	교내	
	학부(과)			핸드폰	
				이메일	

※ 계획중인 주요활동 해당영역을 체크하고 활동실적 내용을 작성

주요 활동		활동 실적	
공통 지표	기본연구 (정책연구)	국문	연구명 기입
		영문	〃
선 택 지 표	☐ 교외 연구비 수주	예) 이공계기초연구과제(연구재단, 50,000천원) 신청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예) 대한공학회 논문 발표 등 논문 3편 발표	
	☐ 저서(전문도서출판)	예) 저술 결과 제출	
	☐ 특허(실용신안) 등록	예) 특허 몇 건 등록	
	☐ 지식(디자인)재산권	예) 지식재산권 등록 관련	
	☐ 기술이전	예) 보유특허(10-00000) 이전 (삼성전자, 50,000천원) 노우하우 이전(LG전자, 50,000천원)	
	☐ 기타학술지 논문 게재	예) 00논문집에 논문 2편 게재	
기타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위와 같이 2016년도 연구영역 활동 실적을 붙임과 함께 제출합니다. 붙임 : 기본연구결과보고서 1부.			
		2016년 월 일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붙임1>

2016년도 연구영역 기본연구 결과보고서

성명	소속	직위	연 락 처	교내	
	학부(과)			핸드폰	
				이메일	
연구명	국문 : 영문 :				
<연구결과보고서 : 별첨>					
위와 같이 2016년도 연구영역 활동 결과보고서를 붙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붙임 : 기본연구 결과 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기본연구 결과보고서

※ 작성요령 안내

1. 연구내용 및 결과는 3쪽 내외로 간략히 정리
2. 각 항목의 박스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 양식으로 기술
3. 작성후에는 작성요령 안내 박스를 제거 후 제출

I. 연구 내용 및 결과

1. 연구의 개요

※ 초록(abstract) 또는 요약문

2. 국내외 연구 현황

※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관련 분야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

3.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자세히 기술(2쪽 이상)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 연구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학문 또는 기술 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 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 등을 기술

<별지 제5호 서식>

2016년도 학생지도영역 활동계획서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교내	
				핸드폰	
				이메일	

비고	주요활동 ※ 해당영역에 체크 및 작성	
공통지표	학생면담	학생면담 계획을 작성
선택지표	☐ 학생취업활동	학생취업활동 계획을 작성
	☐ 독서인증제 독후감평가	학생 독서인증제 독후감평가 활동 계획을 작성
	☐ 독서토론지도	학생 독서토론지도 계획을 작성
	☐ 현장실습지도	학생 현장실습지도 계획을 작성
	☐ 지도학생 외 부경진대회 수상 /참여	지도학생 외부 경진대회 지도 계획을 작성
	☐ 대학원생 상 담지도	지도 대학원생의 상담지도 계획을 작성
	☐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참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참여계획을 작성
지정선택 지표	☐ 학 생 지 도 실적	학생 지도 운영 계획을 작성
기타	기타 학생지도 영역과 관련하여 추가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위와 같이 2016년도 학생지도영역 활동 계획을 제출합니다. 2016 년 월 일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2016년도 학생지도영역 활동보고서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교내	
				핸드폰	
				이메일	

비고	주요활동 ※ 해당영역에 체크 및 작성	
공통지표	학생면담	학생면담 실적을 작성
선택지표	☐ 학생취업활동	학생취업활동 실적을 작성
	☐ 독서인증제 독후감평가	학생 독서인증제 독후감평가 활동 실적을 작성
	☐ 독서토론지도	학생 독서토론지도 실적을 작성
	☐ 현장실습지도	학생 현장실습지도 실적을 작성
	☐ 지도학생 외 부경진대회 수상/참여실적	학생 경진대회 수상 및 참여 실적을 작성
	☐ 대학원생 논문지도	대학원생 논문지도 실적을 작성
	☐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참여실적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참여 실적을 작성
지정선택지표	☐ 학생지도 실적	학생 지도 실적을 작성
기타	기타 학생지도 영역과 관련하여 추가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	
위와 같이 2016년도 학생지도영역 실적을 제출합니다. 2016. . .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붙임1>

외부 경진대회 수상/참가 실적 보고서

소속	직위	지도교수명	서명

구분	대회명	일시	장소	실적내용	참여학생
수상					
참가					

비고	※제출서류 -수상: 실적보고서 + 수상증명(상장 등) -참가: 실적보고서 ※수상 건당 3점 / 참가 건당 1점 - 연간 최대 10점까지 인정
----	---

위와 같이 2015학년도 지도학생 외부 경진대회 수상/참가 실적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확인자 학(과)부장 : (소속) (성명) (인)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귀하

VI. 기타사항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

- 관련근거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제5조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심사위원회)
 - (구성) 교무처장(위원장),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한 당연직위원과 이 외 일반직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기능) 연도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활동계획서, 실적보고서 심사, 개인별 지급액 결정 및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 (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이의신청)
 - 비용 지급 관련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직원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의제기기간 내 이의를 제기한 교직원이 없거나,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통보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별 비용 지급내역을 교무처 및 학생처에 통보하여야 함
- (행정사항)
 - 영역별 비용 신청 및 지급 관련 증빙자료는 교무처 및 학생처에서 5년 이상 자체 보관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
 - 당연직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 심의사항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심사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실적 심사 및 개인별 지급액 결정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 연도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각 영역별 지급기준을 포함한다)

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업무 분담

부서명	주요업무	세부업무
교무처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하 “비용”) 지급 업무 총괄 - 비용 지급 관련 대내외 업무 조정	- 교육부 공문 접수 및 보고 - 비용 지급규정 제·개정 - 연도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수립 - 심사위원회 운영 - 재정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전임교원에 대한 비용 지급 업무	- 지급계획 수립(영역별 지급기준 포함) - 신청서 및 실적심사, 개인별지급액 산정, 비용지급, 지급자료보관 등 제반업무
학생처	직원에 대한 비용 지급 업무	- 지급계획 수립(영역별 지급기준 포함) - 신청서 및 실적심사, 개인별지급액 산정 - 비용지급, 지급자료보관 등 제반업무
K-CDP 센터	K-CDP시스템 활용	- K-CDP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직원은 학생 진로, 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사무국 (재정정책팀)	예·결산 및 예산배정	- 비용에 대한 예산 및 결산(공고) - 재정위원회 심의 - 예산배정
사무국 (재정운영팀)	전임교원의 비용 지급 업무 지원	- 비용지급 업무
정보전산원	전산개발 및 자료처리	- 전산개발 및 자료처리 · 교원업적평가 자료 연계 · K-CDP센터 자료 연계 · 기타 개인별 실적자료 입력 프로그램
종합학사 행정실	전임교원의 비용 지급 업무 지원	- 신청서, 실적보고서 및 개인별 증빙자료 접수 및 주관부서 제출
각 부서	직원의 비용 지급 업무 지원	- 학생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홍보 - 신청서, 실적보고서 및 개인별 증빙자료 접수 및 주관부서 제출

**2016년도 제1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 4. 26.

금 오 공 과 대 학 교
[사 무 국]

대학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I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 순세계 잉여금 수입의 증가분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
- 기타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증가분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
- 공공요금 등 경직성 경비 부족분 계상
- 당초 예산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예산 파악 후 반영

II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예산 총괄내역

(단위 : 천원)

당초예산 (A)	추경예산 (B)	증감액 (B-A)	비 고
56,547,729	67,553,354	11,005,625	○ 순세계잉여금 실세입증가분 반영: 488,853천원 ○ 산학협력단회계 전입금: 103,176천원 - 공공요금 부담분 증액(12,000천원) - 산학기술창조관 대응자금(31,000천원) - 학생의료공제회 이관액(60,176천원) ⇒ 계 : 592,029천원 ○ 성립전 증액 예산 반영: 10,413,596천원 - '16년도 국가지원금 교부액(9,249,949천원) - 국가근로장학금 1차 교부금(459,900천원) - 혁신지원사업 이월비 및 2차 교부금(302,836천원) - '16년도 특성화 사업 이관액(230,911천원) - '15년도 삼성전자SW교육지원사업 이월비(170,000천원)

□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 주요내용

○ 추경예산 편성 내용

부 서 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비고
			당초	증감	최종	
교무처	변호사 자문료	교원인사 관련 변호사 자문료	0	5,000	5,000	신규
교무처	학부(과)전임교원 업무교류 간담회	본부-학부(과) 전임교원 간의 업무교류 간담회	0	5,000	5,000	증액
학생처	학생의료공제회 사업	학생의료공제회 사업 산단→대학회계 이관	0	60,176	60,176	신규
기획협력처	대외재정지원사업 추진	집필위원 수당, 일용임금, 평가위원 수당	14,340	15,741	30,081	증액
기획협력처	K-Mooc 사업	TA인건비, 모니터링 운영비, 여비, 강좌개발	0	50,000	50,000	신규
기획협력처	중장기발전계획서 수정사업	집필비, 인쇄비, 회의비	0	6,500	6,500	신규
기획협력처	자유학기제운영	특강강사료, 재료비 등 운영경비	0	7,750	7,750	신규
기획협력처	캠퍼스 사진공모전	사진공모전 전시회비	5,100	2,000	7,100	증액
기획협력처	학부평가	학부 운영 개선비용	26,000	126,000	152,000	증액
사무국	과운영비	일반직 공무원분	11,160	12,480	23,640	증액
사무국	고문변호사 자문료	우리대학 고문변호사 자문료	0	3,000	3,000	신규
사무국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 임시회비	지역중심 국공립대학 공동 연구개발비	0	3,000	3,000	신규
사무국	교육훈련경비	직원 교육훈련교육비	16,000	4,000	20,000	증액
사무국	교육여비	직원 교육훈련 여비	13,500	6,000	19,500	증액
사무국	행정부서평가	대학행정부서평가	16,000	24,000	40,000	증액
사무국	직원하계연수	직원 하계연수 경비	0	30,000	30,000	신규
사무국	국외대학 연수	직원 해외연수 경비	17,000	53,000	70,000	증액
사무국(시설)	공공요금 부족분	전기요금	115,000	80,041	195,041	증액
사무국(시설)	환경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료(법률상 의무가입 대상)	0	8,000	8,000	신규
사무국(시설)	산학기술창조관 학교대응	시설부대비, 감리비	77,000	51,000	128,000	증액
연구본부	공공IP활용 대응자금	'16년도 발명인터뷰 및 공공IP활용지원사업	0	12,000	12,000	신규
입학관리본부	입시 앱 설치 톨 구입	수험생 및 학부모 중심의 입시웹앱 구축	0	10,000	10,000	증액
도서관	북콘서트	북콘서트 행사지원	0	6,000	6,000	증액
평생교육원	보조금 지원사업 반환금	평생학습중심대학육성사업비 반환	0	11,341	11,341	증액
계			311,100	592,029	903,129	

○ 성립전 예산 편성 내용

부 서 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비고
			당초	증감	최종	
학생처	국가근로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1차 교부금	0	459,900	459,900	성립전예산
기획협력처	혁신지원사업비	'15년도 이월사업비 및 2차 교부금	0	302,836	302,836	성립전예산
	삼성전자SW교육지원사업	'15년도 이월사업비	0	170,000	170,000	성립전예산
kit창의교육원	특성화사업비	특성화사업 대학회계 이관액	0	230,911	230,911	성립전예산
일반예산 소 계			0	1,163,647	1,163,647	
사무국	16년도 국가지원금 예산	'15년도 이월사업비 및 '16년도 교부금	22,059,306	9,249,949	31,309,255	성립전예산
국가지원금 소계			22,059,306	9,249,949	31,309,255	
계			22,059,306	10,413,596	32,472,902	

○ 수입대체경비 자체 예산 조정 : 골프학습관, 학생식당

□ 주요사업별 개요(추경예산편성)

- 변호사 자문료 : 0 → 8,000천원(증 8,000천원)
 - 교원인사 관련 변호사 자문료 : 5,000천원
 - 우리대학 고문 변호사 자문료 : 3,000천원
- 학부(과)전임교원 업무교류 간담회 : 0 → 5,000천원(증 5,000천원)
 - 학부(과) 전임교원 간 업무교류 간담회 경비(식대 및 다과비)
- 학생의료공제회 운영 : 0 → 60,176천원(증 60,176천원)
 - 학생의료공제회 진료금액 반환금 : 57,176천원
 - 학생의료공제회 운영비 : 3,000천원
- 대외재정지원사업 : 14,340 → 30,081천원(증 15,741천원)
 - 행정업무보조 일용임금 : 2,015천원
 - 집필수당 및 평가위원 수당 : 8,500천원
 - 고용산재보험 부담금 : 66천원
 - 보고서 인쇄비 : 3,000천원
 - 회의비 : 2,160천원
- K-MOOC 사업 : 0 → 50,000천원(증 50,000천원)
 - TA인건비 및 모니터링 운영비 : 10,000천원
 - 국내여비 : 1,200천원
 - 강좌개발비 : 38,800천원
- 중장기발전계획서 수정사업 : 0 → 6,500천원(증 6,500천원)
 - 집필수당 : 4,000천원
 - 보고서 인쇄비 : 1,000천원
 - 회의비 : 1,500천원
- 자유학기제 운영 : 0 → 7,750천원(증 7,750천원)
 - 특강강사료 및 보조요원수당 : 3,000천원,
 - 일반수용비 : 350천원
 - 재료비 : 450천원
 - 임차료 : 2,500천원
 - 회의 및 행사경비 : 1,450천원

- 캠퍼스 사진공모전 : 5,100 → 7,100천원(증 2,000천원)
 - 사진 전시회비 : 2,000천원
- 학부평가 : 26,000 → 152,000천원(증 126,000천원)
 - 평가결과에 따른 학부 운영 개선비용 : 126,000천원
- 수도광열비(전기요금) : 115,000 → 195,041천원(증 80,041천원)
 - 전기요금 납부금 : 80,041천원
- 행정부서 과 운영비 : 11,160 → 23,640천원(증 12,480천원)
 - 과 운영비 부족분 : 12,480천원
-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 임시회비 : 0 → 3,000천원(증 3,000천원)
 -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 공통 연구개발에 따른 임시회비 : 3,000천원
- 직원역량강화 교육 사업비 : 116,600 → 233,600천원(증 117,000천원)
 - 교육훈련비 : 4,000천원
 - 교육훈련 여비 : 6,000천원
 - 대학행정부서평가 : 24,000천원
 - 직원하계연수 : 30,000천원
 - 직원해외연수 : 53,000천원
- 환경책임보험료 : 0 → 8,000천원(증 8,000천원)
 - 환경책임보험 가입비(법률상 의무가입 대상) : 8,000천원
- 산학기술창조관 대응 건설비 : 77,000 → 128,000천원(증 51,000천원)
 - 시설부대비(건축물 본인증 포함) : 26,000천원
 - 감리비 : 25,000천원
- 2016년도 발명인터뷰 및 공공IP활용사업 대응자금 : 0 → 12,000천원(증 12,000천원)
 - 대응사업비 : 12,000천원
- 수험생 및 학부모 중심의 입시웹앱 구축사업 : 0 → 10,000천원(증 10,000천원)
 - 프로그램 개발 톨 구입비 : 10,000천원
- 평생교육원 2015년 보조금 반환금 : 0 → 11,341천원(증 11,341천원)
 - 2015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 11,341천원
- 도서관 북콘서트 행사 : 0 → 6,000천원(증 6,000천원)
 - 공연계약비 : 5,150천원
 - 홍보운영비 : 850천원

□ 주요사업별 개요(성립전 예산 편성)

○ 국가지원금 사업 증액분

: 22,059,306 → 31,309,255천원(증 9,249,949천원)

- 공무원 인건비 : 503,760천원,
- 강의료 : 924,979천원
- 시설비 : 7,789,624천원
- 직급보조비 : 31,420천원
- 복리후생비 등 기타경비 : 166천원

○ 국가근로장학금(장학재단 보조금) : 0 → 459,900천원(증 459,900천원)

- 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1차 교부금 : 459,900천원

○ 혁신지원 보조금 사업 : 0 → 302,386천원(증 302,386천원)

- 전담직원 인건비 : 8,800천원
- 특강강사료 등 실비변상 인적경비 : 38,480천원
- 장학금 : 13,250천원
- 자산취득비(실험실습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구입) : 151,032천원
- 기타 운영비 등(보험료, 일반수용비, 행사경비 등) : 102,824천원

○ 특성화 사업단 사업비 이관 : 0 → 230,911천원(증 230,911천원)

- 계약직원 인건비(퇴직급여, 법정부담금 포함) : 112,644천원
- 학생활동지원비 : 11,224천원
-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 93,123천원
- 기타운영경비(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 등) : 6,600천원

○ 삼성전자 SW교육지원 사업 : 0 → 170,000천원(증 170,000천원)

- 교안 및 콘텐츠 개발 집필비 : 27,000천원
- 교육지원 강의료 : 38,400천원
- 멘토지원료 : 8,000천원
- 교육재료비 구입 : 25,000천원
-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 65,000천원
- 기타운영비 : 6,600천원

□ 세입총괄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당초예산액 (A)	추경예산안 (B)	증감 (B-A)	비고
관	항	목				
총 계			56,547,729	67,553,354	11,005,625	
일반예산			27,337,395	28,790,235	1,452,840	
자체수입금			27,337,395	28,790,235	1,452,840	
	교육활동수입		24,702,395	24,702,395	-	
		입학금	260,492	260,492	-	
		수업료	24,201,903	24,201,903	-	
		계절학기수강료	240,000	240,000	-	
	이월금		1,200,000	1,858,853	658,853	
		세계잉여금	1,200,000	1,858,853	658,853	삼성전자 교육지원 사업비포함 (170,000천원)
	다른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27,000	1,230,176	103,176	
		산학협력단회계전입금	927,000	1,030,176	103,176	
		발전기금회계전입금	200,000	200,000	-	
	이자수입		100,000	100,000	-	
		예금이자수입	100,000	100,000	-	
	그 밖의 수입		208,000	898,811	690,811	
		그밖의지원금	-	690,811	690,811	특성화사업이관액, 근로장학금
		잡수입	208,000	208,000	-	
수입대체예산			7,151,028	7,151,028	-	
국가지원금예산			22,059,306	31,612,091	9,552,785	
	인건비		14,860,685	14,860,685	-	
	경상적경비		4,207,621	5,132,600	924,979	
	시설확충비		2,788,000	5,288,000	2,500,000	
	그 밖의 국가지원금		203,000	6,330,806	6,127,806	국가지원금, 혁신지원사업비

□ 세출총괄내역

(단위:천 원)

예 산 과 목			당초예산액(A)	추경예산안(B)	증감 (B-A)
관	항	목			
총계(본예산+수입대체+국고지원금)			56,547,729	67,553,354	11,005,625
일반예산			27,337,395	29,093,071	1,755,676
인적경비			7,983,854	8,230,759	246,905
	인건비		6,205,909	6,305,924	100,015
		공무원인건비	3,472,000	3,472,000	-
		대학회계직원 등 인건비	2,682,241	2,779,041	96,800
		일용임금	51,668	54,883	3,215
	복리후생비		431,377	449,421	18,044
		퇴직급여	218,057	233,901	15,844
		복리후생비	213,320	215,520	2,200
	실비변상인적경비		143,190	223,770	80,580
		그밖의실비변상인적경비	143,190	223,770	80,580
	강의료		851,600	890,000	38,400
		강의료	851,600	890,000	38,400
	법정고용부담금		351,778	361,644	9,866
		부담금	351,778	361,644	9,866
교육연구학생지도및장학비			11,118,161	11,681,705	563,544
	장학금		4,435,926	4,909,076	473,150
		장학금	4,435,926	4,909,076	473,150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등		6,162,015	6,174,015	12,000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	5,355,015	5,355,015	-
		연구지원대응사업비	807,000	819,000	12,000
	학생활동지원비		520,220	598,614	78,394
		학생활동지원비	520,220	598,614	78,394
운영비			6,618,280	7,119,933	501,653
	학교운영비		6,618,280	7,119,933	501,653
		일반수용비	1,160,042	1,190,447	30,405
		공공요금및제세	696,618	781,759	80,041
		차량/선박/비행기유지비	67,700	67,700	-
		지급보험료	83,730	91,730	8,000
		지급임차료	506,238	508,738	2,500
		수선유지비	453,952	453,952	-
		급량비	50,000	50,000	-
		교육훈련/세미나/워크숍	236,500	366,500	130,000
		재료비	231,200	268,162	36,962
		용역비	1,952,790	1,952,790	-

예 산 과 목			당초예산액(A)	추경예산안(B)	증감 (B-A)
관	항	목			
		과운영비	11,160	23,640	12,480
		여비교통비	229,436	232,136	2,700
		업무추진비	288,060	317,825	29,765
		연구개발비	498,254	537,054	38,800
		보전금	29,900	29,900	-
		그밖의운영비	122,700	250,700	133,100
자산적경비			1,467,100	1,841,037	373,937
	건설비		417,000	471,782	54,782
		건설비	417,000	471,782	54,782
	자산취득비		1,050,100	1,369,255	319,155
		유형자산취득비	432,700	738,385	305,685
		무형자산취득비	617,400	630,870	13,470
예비비및기타			150,000	219,637	69,637
	예비비및기타		150,000	219,637	69,637
		예비비	50,000	50,000	-
		반환금	100,000	169,637	69,637
수입대체경비			7,151,028	7,151,028	-
	수입대체경비		7,151,028	7,151,028	-
국가지원금			22,059,306	31,309,255	9,249,949
	인건비		14,761,188	15,265,054	503,866
		공무원인건비	14,757,088	15,260,848	503,760
		대학회계직원 등 인건비	3,100	3,206	106
		일용임금	1,000	1,000	-
	복리후생비		308,030	308,090	60
		복리후생비	308,030	308,090	60
	실비변상적인적경비		319,097	350,517	31,420
		직무수행경비	319,097	350,517	31,420
	강의료		177,560	1,102,539	924,979
		강의료	177,560	1,102,539	924,979
	학교운영비		3,130,431	3,130,431	-
		일반수용비	-	-	-
		공공요금	710,382	710,382	-
		차량유지비	-	-	-
		지급임차료	1,877,000	1,877,000	-
		수선유지비	-	-	-
		재료비	50,000	50,000	-
		용역비	492,049	492,049	-
		과운영비	-	-	-

예 산 과 목			당초예산액(A)	추경예산안(B)	증감 (B-A)
관	항	목			
		여비교통비	1,000	1,000	-
		자산적경비	3,363,000	11,152,624	7,789,624
		건설비	911,000	8,700,624	7,789,624
		유형자산취득비	2,452,000	2,452,000	-
		예비비및기타	-	-	-
		반환금	-	-	-

학부(과) 업무교류 간담회 경비

(교무처)

<사업경비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총소요액	재원구분		
		대학회계	일반회계	기타사업단 예산등
학부(과) 전임교원 업무교류 간담회	5,000	5,000		

담당자 : 교무과 김옥란(과장), 김민아(담당자, 054-478-7032)

☐ 사업 목적(필요성)

- 총장-학부(과) 전임교원 간의 업무교류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의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합의점 모색

☐ 현황 및 문제점

- 본부-학부(과) 전임교원간의 간담회를 통한 정보교류 필요
 - 본부와 학부(과)의 어려움을 공유함으로써 합의점 모색

☐ 사업(요구) 내용

- 간담회 경비
 - 식대 및 음료 구입비

☐ 요구액 산출내역(구체적 표시)

(단위:천원)

2016년도 예산액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역				사업 구분
	목	세부 명세	세부산출내역	예산요구 액	
0	교육훈련세 미나워크숍	학부(과) 업무교류 간담회	학부(과) 업무교류 간담회 : 312,500원*16회=	5,000	

학생의료공제회 운영

(학생처)

<사업경비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총소요액	재원구분		
		대학회계	일반회계	기타사업단 예산등
학생의료공제회 운영사업	60,176	60,1760		

담당자 : 학생처 김종필(과장), 류정희(담당자, 054-478-7119)

□ 사업 목적(필요성)

- 학생의료공제회
 - 의료공제회 가입한 학생에 대한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진료비 보전
 - 학생의 건강보호, 유지·증진등 보건향상으로 건강한 대학생활 고취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공제회 해산 : 2013년
- 2016. 4월 기준 의료공제 잔여 회원 : 402명
 - 402명 회원이 졸업시까지 진료비 보전

□ 사업(요구) 내용

- 학생의료공제회 운영비
 - 일반수용비 및 홍보자료제작용 광고선전비
- 학생의료공제회 반환금(보전금)
 - 402명에 대한 진료비 보전

□ 요구액 산출내역(구체적 표시)

(단위:천원)

2016년도 예산액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역				사업 구분
	목	세부 명세	세부산출내역	요구액	
0	일반수용비	소모품비	1. 의료지원실 건강증진 캠페인 운영 : 500,000원*2회= 2. 나. 비품수선용 소모용품 구입 : 50,000원*10회=	1,500	기본
		광고선전비	1. 의료지원실 안내 홍보용품 제작 : 1,000,000원*1회= 2. 장애인 캠페인 홍보물 제작 : 500,000원*1회=	1,500	기본
	반환금	그밖의반환 금	1. 학교의료공제회 진료금액 반환금(보전금) : 57,176,000원*1식=	57,176	기본
계				60,176	

□ 향후 추진계획(예산 반영시)

- 의료공제 회원에 대한 진료비 보전으로 건강 보호
- 건강증진 캠페인, 장애인 캠페인 및 의료지원실 안내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학생 보건향상에 기여

대외 재정지원 사업

(기획협력처)

<사업경비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총소요액	재원구분		
		대학회계	일반회계	기타사업단 예산등
대외 재정지원 사업	30,081	30,081		

※ 담당자 : 기획협력처 김기수(과장), 진기정(담당자, 054-478-7075, 010-7600-8376)

□ 사업 목적(필요성)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및 대학 특성화 사업 등의 지속적인 선정을 통해 열악한 대학 재정 확충을 도모

※ 사업 종류 : ACE사업, CK사업, 혁신지원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예산 편성 현황(14,340천원)

(단위:천원)

목	세부명세	세부산출내역	예산요구액	사업 구분
그밖의실비 변상인적경비	위원회 수당	500,000원*5명*3개분야	7,500	주요
일반수용비	인쇄비	20,000원*50부*3개분야	3,000	
업무추진비	회의비	160,000원*8회*3개분야	3,840	

- ACE사업, CK사업, 혁신지원사업 선정을 위하여 계획서 수립 등 인력 지원과 예산이 필요하나, 기존 예산으로는 3개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 우리대학은 보고서 작성 인력 Pool이 없어, 보고서 집필 수당 등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T/F 구성이 어려움

□ 사업(요구) 내용

- ACE사업 세부내역 : 5,220천원
 - 집 필 비 : 500천원×3명=1,500천원
 - 평가수당 : 500천원×4명=2,000천원(컨설팅수당)
 - 인 쇄 비 : 20천원×50부=1,000천원
 - 업 추 비 : 90천원×8회=720천원

- 특성화사업 세부내역 : 5,220천원
 - 집 필 비 : 500천원×3명=1,500천원
 - 평가수당 : 500천원×4명=2,000천원(외부위원 수당)
 - 인 쇄 비 : 20천원×50부=1,000천원
 - 업 추 비 : 90천원×8회=720천원
- 혁신지원사업 세부내역 : 5,301천원
 - 일용임금 : 65천원×31일=2,015천원
 - 집 필 비 : 500천원×3명=1,500천원
 - 부 담 금
 - 고용보험 : 2,015천원*15/1000=31천원
 - 산재보험 : 2,015천원*17/1000=35천원
 - 인 쇄 비 : 20천원×50부=1,000천원
 - 업 추 비 : 90천원×8회=720천원

□ 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2016년도 예 산 액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역				사업 구분
	목	세부 명세	세부산출내역	예산요구액	
14,340	일용 임금	일용직임금	65,000원*31일	2,015	주요
	그밖의 실비변 상인적 경비	위원회 수당	500,000원*3명*3개분야	4,500	
		평가 수당	500,000원*4명*2개분야	4,000	
	부담금	고용산재 보험부담금	고용보험:2,015천원*15/1000 산재보험:2,015천원*17/1000	66	
	일반수 용비	인쇄비	20,000원*50부*3개분야	3,000	
	업무추 진비	회의비	90,000원*8회*3개분야	2,160	
	계			15,741	

□ 향후 추진계획(예산 반영시)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2차 진입을 위한 집필진 구성 예정
- 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을 위하여 집필진 구성 예정
- 혁신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집필진 구성 예정

K-MOOC 사업

(기획협력처)

<사업경비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총소요액	재원구분		
		대학회계	일반회계	기타사업단 예산등
K-MOOC 사업	50,000	50,000		

※ 담당자 : 기획협력처 김기수(과장), 진기정(담당자, 054-478-7075, 010-7600-8376)

□ 사업 목적(필요성)

- 대학의 우수강좌를 일반에게 공개·공유하여, 대학교육 혁신 및 고등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기회균형 실현
- 국가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 K-MOOC 활용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차후 재정지원사업 선정을 통한 대학재정 확충에 기여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4년 동안 정부 재정지원사업비 중 약 5억 3천만원의 예산을 동영상 강좌 개발 및 운영에 투자하고 있음
- 연간 30여개 이상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KOCW 공개 의무제를 운영하여 대·내외적으로 활발히 활용하고 있음
- 예산 미확보 시 ACE사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선정에 어려움 발생

□ 사업(요구) 내용

- 연구개발비 : 강의제작비 등 38,800천원
 - 강의 제작, 콘텐츠 제작, 자막 제작, 영어번역
- 학교운영비 : TA 및 모니터링단 활동비 10,000천원
- 여비교통비 : 출장비 등 1,200천원

□ 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2016년도 예산액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역				사업 구분
	목	세부 명세	세부산출내역	예산요구액	
-	연구 개발비	연구 용역비	강의제작10,800,000원*1식 콘텐츠제작22,000,000원*1식 자막제작3,000,000원*1식 영어번역3,000,000원*1식	38,800	주요
	학교 운영비	그밖의 운영비	강좌운영(TA활동)1,000,000원 *2명*4개월 모니터링단활동100,000원*5명 *4개월	10,000	
	여비 교통비	국내 여비	출장비100,000원*3명*4회	1,200	
	계			50,000	

□ 향후 추진계획(예산 반영시)

구분	강좌명	주요 활용 목적	활용 계획		
			정규수업 활용	정규수업 외 대학 내 활용	대학 외 활용
'16년 개발강좌	유체역학	정규수업보완 및 플립러닝, 학점인정	학습 부진 등 학업 손실 최소화	영어강의의 대체 및 휴학전후 학습	학점 은행제 강의 및 산업체 재직자 재교육

- 본교 원격강의 개설을 통한 K-MOOC 이수자 학점인정 제도 도입 예정
- 정규 강의시간을 통해서 활용은 주로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내하여, 반복학습에 의한 이해력 증대를 도모

중장기발전계획서 수정사업

(기획협력처)

<사업경비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총소요액	재원구분		
		대학회계	일반회계	기타사업단 예산등
중장기발전계획서 수정사업	6,500	6,500		

※ 담당자 : 기획협력처 김기수(과장), 진기정(담당자, 054-478-7075, 010-7600-8376)

□ 사업 목적(필요성)

- 대학원별 중장기 발전계획서 수립 및 대학 특성화 분야에 대한 수정을 위하여 중장기 발전계획 수정사업을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대학원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대학원별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경우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특성화 분야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발전계획서 일부 수정 필요
- 대학교육 특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대학 특성화 및 대학원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추가 반영이 곤란함

□ 사업(요구) 내용

- 집 필 비 : 500천원×8명=4,000천원
- 인 쇄 비 : 20천원×50부=1,000천원
- 업 추 비 : 30천원×10명×5회=1,500천원

□ 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2016년도 예산액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역				사업 구분
	목	세부명세	세부산출내역	예산요구액	
-	그밖의실비변 상인적경비	위원회 수당	500,000원*8명	4,000	주요
	일반수용비	인쇄비	20,000원*50부	1,000	
	업무추진비	회의비	30,000원*10명*5회	1,500	
	계			6,500	

□ 향후 추진계획(예산 반영시)

- 대학원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후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정 실시

자유학기제 운영

(기획협력처)

<사업경비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총소요액	재원구분		
		대학회계	일반회계	기타사업단 예산등
자유학기제 운영	7,750	7,750		

※ 담당자 : 기획협력처 김기수(과장), 강선화(담당자, 054-478-7083)

☐ 사업 목적(필요성)

- 정부의 2016년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진로 체험 프로그램 제공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2015년도 6개 프로그램 운영: 13개교, 467명 참여
(혁신지원사업비로 운영)
- 혁신지원사업종료(2016. 4월)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
 - 진로체험버스 5개 프로그램 계획 제출(교육부): 2016. 3월
 - 2016년도 하반기 프로그램 추가 계획 및 운영 예정

☐ 사업(요구) 내용

- 진로체험버스 프로그램 운영: 5개 프로그램 예정
 - 기계설계공학과(기계설계공학 및 햅틱 시스템 체험), 컴퓨터공학과(알파고도 한 줄부터 - 프로그래밍 맛보기), 경영학과(경영학과 함께하는 사람책 도서관), 화학소재융합학부(화학소재융합학부와 함께하는 전공체험), 전자공학부(전자공학부와 함께 하는 친환경에너지 체험)

□ 요구액 산출내역(구체적 표시)

(단위:천원)

2016년도 예산액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역				사업 구분
	목	세부 명세	세부산출내역	예산요구액	
-	기타실비	특강강사료	100,000원*5회	500	주요
	변상인적경비	보조요원수당	50,000원*10명*5회	2,500	
	일반수용비	소모품비	70,000원*5회	350	
	재료비	교육연구재료비	15,000원*30명*1회	450	
	지급임차료	차량임차료	500,000원*5회	2,500	
	업무추진비	회의비	200,000원*5회	1,000	
		행사경비	3,000원*30명*5회	450	
	계			7,750	

□ 향후 추진계획(예산 반영시)

○ 2016년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 (대학회계) 교육부와 교육청과의 프로그램 매칭 결과에 따른 진로 체험버스 5개 프로그램 운영(기계설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영학과, 화학소재융합학부, 전자공학부)
- (혁신지원사업비) 2016-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대구·경북 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캠퍼스 사진 공모

(기획협력처)

<사업경비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총소요액	재원구분		
		대학회계	일반회계	기타사업단 예산등
캠퍼스 사진공모	7,100	7,100	-	-

※ 담당자 : 기획협력처 김기수과장, 안미애(담당자, 054-478-7079)

□ 사업 목적(필요성)

- 아름다운 캠퍼스 경관과 변화되는 모습을 발굴·보존하여 대내·외 홍보 자료로 활용
-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애교심 고취
- 지역민을 대상으로 대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대학 이미지 홍보

□ 현황 및 문제점

- 참여기회 확대 및 다양한 계절의 재원확보를 위해 연 2회에 나누어 시행
- 지역민 대상의 홍보의 한계
 - 현수막 게시, 포스터 제작의 다양한 홍보방법 모색 필요
 - 지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외 홍보 강화
- 당선작에 대한 활용이 미비
 - 사진 전시회를 통하여 캠퍼스 및 공모전 홍보 확대 필요(추가 예산 필요)

□ 사업(요구) 내용

- 예산: 7,100천원(당초 5,100천원에서 2,000천원 추가경정 요청)
- 참여 동기부여 및 독려를 위한 시상금 책정

수 상	시상내역	비 고
대 상 (1명)	총장상 및 상금 30만원	심사 결과에 따라 심사인원 및 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최우수상 (2명)	총장상 및 상금 20만원	
우 수 상 (5명)	총장상 및 상금 10만원	
입 선 (6명)	상금 5만원	

- 대내·외 홍보자료로서의 활용을 위해 작품성을 고려한 입상작을 선정

하고자 심사위원의 과반수를 사진관련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수당책정

- 현수막 및 포스터 제작 등의 행사비 책정으로 사업 홍보 및 참여 대상의 확대
- 사진공모전 당선작품을 활용한 전시회를 통해 캠퍼스 홍보 확대

□ 요구액 산출내역(구체적 표시)

(단위:천원)

2016년도 예산액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역				사업 구분
	목	세부 명세	세부산출내역	예산요구액	
5,100	그밖의 운영비	행사비 (캠퍼스 사진 공모전)	응모작품 사전 전시 인화비 (사진 인화 및 제작) 5,000원×100부 =	500	주요
			당선작품 전시비 (인화 및 액자제작) 50,000원×30부=	1,500	

□ 향후 추진계획(예산 반영시)

- 1차 캠퍼스 사진 공모전
 - 행사준비 : 2016. 3~4월
 - 공모기간 : 2016. 4~5월
 - 응모작품 사전 전시회: 5월 말
 - 심사·시상금 및 외부 심사위원 수당 : 2016. 6월
- 2차 캠퍼스 사진 공모전
 - 행사준비 : 2016. 8~9월
 - 공모기간 : 2016. 9~11월
 - 심사·시상금 및 외부 심사위원 수당 : 2016. 12월
- 당선작 사진 전시회 : 2016. 1월

학 부 평 가

(기획협력처)

<사업경비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총소요액	재원구분		
		대학회계	일반회계	기타사업단 예산등
학부평가	156,000	156,000		

※ 담당자 : 기획협력처 김기수(과장), 최호영(담당자, 054-478-7076)

☐ 사업 목적(필요성)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가 시행
- 각종 평가를 통한 학교 운영 개선 및 교육 질 향상

☐ 현황 및 문제점

- 학부평가가 자체평가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대학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함에도, 전년도 대비하여 인센티브 지급액이 57%(34,000천원) 가량 감액됨

☐ 사업(요구) 내용

- 학부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사업비 사전 배부
- 학부평가 결과에 따라 학부(과)별 차등적 인센티브의 추가 지급을 실시하여 대학 경쟁력 제고

☐ 요구액 산출내역(구체적 표시)

(단위:천원)

2016년도 예산액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역				사업 구분
	목	세부 명세	세부산출내역	예산요구액	
30,000	그밖의 운영비	인센티브	학부 운영 개선 비용 126,000,000원*1회=	126,000	주요

□ 향후 추진계획(예산 반영시)

- 평가위원회 구성 : 7월
- 학부운영 개선 기본 자금 배정 : 7월
- 평가 편람 및 기준 개발 : 8월
- 평가 시행, 분석 및 결과 발표 : 9월
- 평가 결과에 따른 학부 운영 개선 비용 지급 : 10월

과운영비

(사무국)

<사업경비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총소요액	재원구분		
		대학회계	일반회계	기타사업단 예산등
과운영비	12,480	12,480		

※ 담당자 : 재무과 배효근(과장), 강태구 팀장, 이강욱(담당자, 478-7116)

☐ 사업 목적(필요성)

- 기존 국고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었던, 일반공무원의 과운영비를 대학회계로 일원화 하여 편성

☐ 현황 및 문제점

- 각 행정부서의 과운영비 중 일반직 공무원 분 등의 부족분을 반영

☐ 사업(요구) 내용

- 과운영비 부족분 반영 : 1,040천원*12월=12,480천원

☐ 요구액 산출내역(구체적 표시)

(단위:천원)

사업명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예산 요구내역			
		당초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 세부산출내역
과운영비	12,620	11,160	23,640	12,480	- 과운영비 부족분 증액 : 1,040,000원*12월=12,480,000원
계	12,620	11,160	23,640	12,480	

☐ 향후 추진계획(예산 반영시)

- 과운영비 매월 지급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임시회비

(사무국)

<사업경비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총소요액	재원구분		
		대학회계	일반회계	기타사업단 예산등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 협의회 임시회비	3,000	3,000		

※ 담당자 : 재무과 배효근(과장), 강태구 팀장, 이강욱(담당자, 478-7116)

□ 사업 목적(필요성)

- 지역중심 국·공립대는 설치이념, 연혁적 배경, 지리적 위치 등이 거점대학과 다른 특성이 있고, 그런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중심대학 발전방안 등의 수립이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사립대와 거점국립대 위주로 고등교육 정책방향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중심 국·공립대가 지역에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지난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 협의회 제2차 정기총회 회의결과('16.3.11(금)) 지역중심대학 발전방안의 신속한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을 하였으며,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임시회비를 부담하기로 함.

□ 사업(요구) 내용

- 지역중심 대학 발전방안 연구개발을 위한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 임시회비 편성(각 대학별 3,000천원)

□ 요구액 산출내역(구체적 표시)

(단위:천원)

사업명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예산 요구내역			
		당초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 세부산출내역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 임시회비	0	0	3,000	3,000	-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임시회비 : 3,000,000원*1회=3,000,000원
계	0	0	3,000	3,000	

□ 향후 추진계획(예산 반영시)

-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 임시회비 납부(2016. 5.)
- 현재 목포대학교 주관으로 지역중심대학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가 진행 중

직원역량강화 교육비

(사무국)

<사업경비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총소요액	재원구분		
		대학회계	일반회계	기타사업단 예산등
직원역량강화 교육비	233,600	233,600		

※ 담당자 : 총무과 함종태(과장), 남상규, 김주원(담당자, 478-7092, 478-7099)

□ 사업 목적(필요성)

- 교육부 국립대학 직원 역량 강화 운영실적 평가 보고서 및 각종 재정 지원 사업*의 심사에 직원 역량 강화 실적 및 재정 투입도가 반영됨으로 전년도 수준의 사업 유지가 필요한 실정임 특히, '16년도부터는 대학회계직원에 대한 평가도 확대되어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함

*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직원 역량 강화 부분), 대학기관평가 인증(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부분)

- 다양한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대학 구성원 간 대학 발전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Best-HRD 인증기관으로서의 책무성 확대가 필요하며, 국외 선진대학 연수기회 제공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 국제화 능력 배양 및 근무의욕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타 국립대도 매년 국외 선진대학 연수 실시(경북대, 안동대, 충남대 등)

- 당초 예산 편성시 직원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삭감 편성할 수밖에 없었으나 직원들의 사기저하 개선 및 근무의욕을 증진시키고자 전년도 학생지도비 잔액을 활용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자함

□ 현황

- 매년 하계 방학 중에 전체 직원 연수를 실시함
- 매년 15명 내외의 인원을 대상으로 국외 선진 대학에 연수를 실시해 왔음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유형(인원)	- 테마(5팀, 23명)	미실시(세월호 사건)	- 선진대학(15명) - 테마(3팀, 12명)
연수장소	- 싱가포르 등		- 선진대학 : 프랑스 등 3개국 - 테마 : 중국 등
연수기간	- 5일 내외		- 선진대학 : 10일 - 테마 : 5일 내외

□ 요구액 산출내역(구체적 표시)

(단위:천원)

사업명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예산 요구내역			
		당초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 세부산출내역
전문기관 교육훈련비 등	136,800	83,600	93,600	10,000	- 교육훈련 경비 부족액: 200,000원 × 20명=4,000,000원 - 교육훈련 여비 부족액: 300,000원 × 20명=6,000,000원
국외 선진대학 연수	100,000	17,000	70,000	53,000	- 국외 선진대학 연수경비 부족액: 53,000,000원 × 1회=53,000,000원
직원 하계연수	24,000	0	30,000	30,000	- 직원하계연수: 30,000,000원 × 1회=30,000,000원
부서평가 인센티브	40,000	16,000	40,000	24,000	- 행정부서 평가 인센티브 부족액: 24,000,000원 × 1회=24,000,000원
계	300,800	116,600	233,600	117,000	

※ 직원교육 훈련비 감액 편성 : (2015년)300,800천원 ⇒ (2016년)233,600천원으로
전년 대비 67,200천원 감액 편성

※ 2015년 직원 학생지도비 불용액 135,000천원 활용

□ 향후 추진계획(예산 반영시)

- 대학 회계직원 대외기관 연수 적극 추천(2016. 5. ~)
- 하계 방학 중 직원 연수 실시(2016. 7.)
- 선진 대학 3개 이상을 포함하는 국외 연수 실시(2016.5. ~ 6.)
 -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 단체 및 개인별 연수보고서 각 1부
 - 연수단장(팀장) 책임 하에 연수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발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연수 보고회 : 금오역량 아카데미 교육 등을 활용
 - 전자게시판 게시 : 연수결과 전 직원 사례 공유

공공요금(전기요금)

(사무국)

<사업경비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총소요액	재원구분		
		대학회계	일반회계	기타사업단 예산등
공공요금(전기요금)	195,041	195,041		

※ 담당자 : 재무과 배효근(과장), 강태구 팀장, 이강욱(담당자, 478-7116)

☐ 사업 목적(필요성)

- 학교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 예산 반영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국고지원금 및 각 수입대체부서 기본경비 부담분을 제외한 공공요금 부족분을 계상하여, 예산에 반영

☐ 사업(요구) 내용

- 공공요금(전기요금) 부족분 반영 : 6,670천원*12월=80,040천원

☐ 요구액 산출내역(구체적 표시)

(단위:천원)

사업명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예산 요구내역			
		당초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 세부산출내역
공공요금 (전기요금)	525,123	115,000	195,041	80,041	- 과운영비 부족분 증액 : 1,040,000원*12월=12,480,000원
계	525,123	115,000	195,041	80,041	

☐ 향후 추진계획(예산 반영시)

- 전기요금 대금 매월 납부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안전과)

<사업경비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총소요액	재원구분		
		대학회계	일반회계	기타사업단 예산등
환경책임보험 가입	8,000	8,000		

※ 담당자 : 시설안전과 김천일(과장), 김선교(담당자, 054-478-7137, 010-5059-1388)

☐ 사업 목적(필요성)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16. 7. 1.)에 따른 우리대학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요

※ 우리학교는 특정유해물질 배출하는 시설로 보험가입 대상임

☐ 현황 및 문제점

- 대상시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 17조 1항 2호에 의한 시설
 - 실험실 폐수 보관시설(글로벌관, 테크노관 폐수탱크) 보유

☐ 사업(요구) 내용

- 환경책임보험 가입(법률상 의무가입 대상)

☐ 요구액 산출내역(구체적 표시)

(단위:천원)

2016년도 예산액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역				사업 구분
	목	세부 명세	세부산출내역	예산요구액	
-	지급보 험료	지급보 험료	1식*8,000천원	8,000	

☐ 향후 추진계획

- 2016. 6월 : 계약요청
- 2016. 7월 : 환경책임보험 가입

산학기술창조관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 용역

(시설안전과)

<사업경비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총소요액	재원구분		
		대학회계	일반회계	기타사업단 예산등
산학기술창조관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 용역	20,000	20,000		

※ 담당자 : 시설안전과 김천일(과장), 박일룡(담당자, 054-478-7133, 010-5091-5889)

☐ 사업 필요성

- 「녹색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의 신축, 증축하는 경우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의무적 취득해야 함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에 따라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설계단계에서 승인완료
- 본인증 법적 의무 대상 : 연면적 8,236㎡(창조관 신축)

☐ 사업(요구) 내용

-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 (법률상 의무 대상)

☐ 요구액 산출내역(구체적 표시)

(단위:천원)

2016년도 예산액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역				사업 구분
	목	세부 명세	세부산출내역	예산요구액	
20,000	건설비	시설부 대비	20,000,000원*1식=	20,000	

☐ 향후 추진계획(예산 반영시)

- 2016년 5월 : 계약요청
- 2016년 6월 : 착수
- 2017년 12월 : 완료(본인증 승인)

2016년도 발명인터뷰 및 공공IP활용지원사업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팀)

<사업경비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총소요액	재원구분		
		대학회계	일반회계	기타사업단 예산등
2016년도 발명인터뷰 및 공공IP활용 지원사업	48,000	12,000		36,000 (현물12,000)

※ 담당자 : 권혁문(팀장, 054-478-6735), 장재혁(담당자, 054-478-6736)

□ 사업 목적(필요성)

- 대학이 출원 전 발명인터뷰(발명심의제도)를 통해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산업계 활용이 유망한 특허기술을 선별하여 사업화되도록 지원함으로써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촉진

□ 현황 및 문제점

- 발명신고건수가 매년 50%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290건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인 발명심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간단한 발명자 상담만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바, 발명신고 전체 건에 대하여 산학협력단 승계가 이루어지는 상황
 - 발명인터뷰 사업을 통해 심도있는 발명심의를 진행하여 사업화 가능한 발명만을 승계하고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전략필요
- 특허출원도 매년 50% 이상 증가하여 2015년 기준 245건에 이르고 있음.
 - 학생발명이나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출원은 심사청구하지 않는 전략으로 매년 50%정도의 등록률을 유지
- 최근 3년간 기술사업화 성과는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등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2013년 19건 2억4천만원 수준에서 2015년 48건, 5억2천만원달성
 - 기술이전 비중은 IT분야가 다수를 차지하며, 노하우 기술이전이 50%를 상회

□ 사업(요구) 내용

○ 정량적 목표

구분		전년도 실적	사업 목표	비고
발명자 인터뷰 (1차)	개최횟수	-	15건	
	발명건수	-	120건	
심화인터뷰 (2차)	개최횟수	-	7건	
	발명건수	-	100건	
발명인터뷰를 통한 출원건수	국내	-	80건	
	해외	-	5건	PCT포함
기술마케팅	SMK 제작	4건	10건	
	기술설명회	2건	3건	
	기타	-	1건	
기술 이전*	계약건수	-	2건	
	기술료(천원)	-	150,000천원	

* 전년 및 당해연도 발명인터뷰 수행을 통해 발굴된 우수특허의 조기사업화 목표, 기술료는 계약금액 기준

○ 정성적 목표

구분	2015	2016	2017	비고
IP 관리 체계	지식재산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	지식재산위원회 정례화 산하에 발명심의위 별도 설치	발명신고⇒발명심의 ⇒특허출원 프로세스 정착	
발명자 인식 제고	논문을 중요시 특하는 교수평가용으로만 인식	직무발명 교육확대 특허활용 사례 전파	특허출원후 논문제출 인식 정착	
우수 IP 확보	기술사업화팀 통보 없이 발명자 독자 출원	출원전 선행기술조사 의무화 및 IP-R&D 과제 신규 출범	선행기술조사 규정 마련 특허정보활용 교육 강화	
수익 창출 모델 구축	발명자가 기술이전 기업 수배	발명인터뷰 정례화로 기술이전 대상 IP 적극 발굴	발명인터뷰와 정부 성과활용사업 연계	
기타	과도한 출원량에 비해 적은 기술이전 실적	기술이전 이원체계 정립(발명인터뷰+발명 자 수요기업 발굴)	창출 프로세스 정착	

□ 요구액 산출내역(구체적 표시)

(단위:천원)

2016년도 예산액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역				사업 구분
	목	세부 명세	세부산출내역	예산요구액	
0	연구지원 대응사업비	연구지원 대응사업비	2016년도 발명인터뷰 및 공공IP활용지원사업	12,000	주요

□ 향후 추진계획(예산 반영시)

- 지식재산(IP)에 대한 교육강화
 - 전담인력 : 전담인력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 발명자 : 교육을 통한 발명자들의 인식제고
 - 전문가활용 : 전문가초빙을 통한 우수특허창출 및 기술이전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IP관련 지원서비스 체감 및 만족도 향상을 통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전담특허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발명인터뷰제 시행을 통한 우수 기술 조기선별
 - Lab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IP서비스 제공
 - 선행기술조사 강화를 통한 무의미한 출원 지양 및 출원명세 품질 제고
- 발명인터뷰제와 심화인터뷰를 연계한 기술사업화 가능성제고
 - 직무발명에서부터 특허출원 및 사업화까지 일원화 시스템구축

수험생 및 학부모 중심의 입시웹앱 구축

(입학관리본부)

<사업경비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총소요액	재원구분		
		대학회계	일반회계	기타사업단 예산등
수험생 및 학부모 중심의 입시웹앱 구축	10,000	10,000		

※ 담당자 : 입학관리본부 팀장 한상규 (054-478-7052)

□ 사업 목적(필요성)

-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입시관련 정보를 PC환경과 동일하게 모바일환경에서 제공
 - 학교홈페이지와 소스를 통합하여 수요자 편의 및 관리 효율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수험생 및 학부모들이 입시앱 설치 과정의 번거로움과 학교홈페이지와의 이중화 구조로 사용에 불편함을 제기

※ 2015년 7월부터 입시 모바일앱 서비스로 실시간 입시정보 서비스 제공

- 수요자 모바일 접속경로 혼란 및 유지보수 곤란
 - 모바일 환경에서 우리대학 홈페이지의 입시정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며, 입시앱을 통하지 않고서는 조회 불가
 - 프로그램 및 자료 수정 시 신속한 유지보수 곤란

□ 사업(요구) 내용

- 반응형 웹앱 구축을 통한 사용자 편의 중심의 업그레이드 추진

※ Html5와 CSS를 통한 입시웹앱 구축

- 프로그램 개발 도구를 구입하여 반응형 웹앱 개발
- 정보전산원 자체 개발 및 유지보수 지원

구분	개발 항목(주요)
프로그램 개발	- 개발언어 : 웹크레아기반의 html와JS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 홈페이지 제작 및 개발 - 반응형 웹으로 구축 - 메뉴구성(안)/메인페이지,앱 다운로드페이지 (안드로이드,아이폰), 입학안내 등

□ 기대효과

- 스마트폰에서 금오공과대학교를 치면 환경이 PC인 경우 학교 홈페이지가 뜨고 웹인 경우 웹앱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반응형 웹앱 구축으로 인해 편리성 도모
- 학교홈페이지와 소스를 통합하여 관리가 편하고 수정시 학생들의 불편함 없이 바로 반영할 수 있음
- 학생들한테 일일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시웹앱으로 변경하여 접속 유도 가능함으로 대외적 이미지 제고

□ 요구액 산출내역(구체적 표시)

(단위:천원)

2016년도 예산액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역				사업 구분
	목	세부 명세	세부산출내역	예산요구액	
-	자산 취득비	무형자산 취득비	프로그램 개발 Tool 구입	10,000	주요

□ 향후 추진계획(예산 반영시)

- 프로그램 개발 : 2016. 4 ~ 2016. 6. 30.
- 서비스 시행 : 2016. 7월중(수시모집 홍보 시행)

독서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사업경비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총소요액	재원구분		
		대학회계	일반회계	기타사업단 예산등
독서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6,000	6,000		

※ 담당자 : 열람팀 손창식(팀장), (054-478-7167)

□ 사업 목적(필요성)

- 독서를 통하여 전인적인 인성함양과 감성역량을 강화하고, 독서 활성화로 kit 인재인증제 참여를 유도하여 학생들의 독서력 및 글쓰기 능력을 향상

□ 현황 및 문제점

- 독서인증제 프로그램 운영
 - 2011년 3월부터 시행, 독후감 1,166건 평가 신청
- 독서클럽 운영
 - 29팀 활동(회원 274명, 지도교수 29명)
- 도서관 문화행사 개최
 - ‘김용택 시인 초청 북 콘서트’ : 2015.05.19.(260명 참석)
 - Co-Reading 서평 공모전 2회
- kit 인재인증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독서인증제 프로그램 운영
 - ‘참사람’ 분야 독서인증(필수, 10점) 점수 반영

※ 2015학년도 운영 실적임

□ 사업(요구) 내용

- 도서관 문화행사(북콘서트)

□ 요구액 산출내역(구체적 표시)

(단위:천원)

2016년도 예산액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역				사업 구분
	목	세부 명세	세부산출내역	예산 요구액	
6,000	학생활동 지원비	문 화 행사비	1. 공연 계약비		주요
			가. 작가초청 1,500,000원*1명=	1,500	
			나. 북뮤지션 2,000,000원*1팀=	2,000	
			다. 북콘서트 전문기술 스태프 150,000원*3인=	450	
			라. 뮤지션용 음향장비 1,000,000원*1식=	1,000	
			마. 영상제작 200,000원*1식=	200	
			2. 홍보 운영비		
			가. 우수참가자 상품 20,000원*10권=	200	
			나. 현수막 및 X배너 150,000원*3개=	450	
			다. 문구 및 다과준비 200,00원*1회=	200	

□ 향후 추진계획(예산 반영시)

- 도서관 문화행사
 - 행사시기 : 10월중
 - 행사내용 : 북콘서트 개최

참고

“참고자료명 기재”

평생학습중심대학육성사업 I 유형(비학위과정)

(평생교육원)

<사업경비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총소요액	재원구분		
		대학회계	일반회계	기타사업단 예산등
대응자금 반환금	11,341	11,341		

□ 목적(필요성)

- 2015학년도 사업에 배정된 대응자금은 전액 집행되어야 함에도 미 집행되었으며, 대응자금 잔액과 이자는 대학회계로 반납됨.
- 대응자금의 잔액은 국가평생진흥원으로 반납되어야 함.

※ 주관기관은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대응투자)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축 또는 미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사업관리 운영 지침)

□ 사업 추진 경과

- 운영과정 현황

구분	프로그램명	개강일	종강일	교육시간	모집정원	교육인원	수료인원
취·창업 과정	발명과 창업스쿨	2015.10.05	2016.01.28	130	20	10	9
	캐디전문가양성과정	2015.09.16	2016.01.29	148	15	13	13
	기업안전교육전문가양성과정	2015.09.15	2015.12.16	130	20	24	24
기타과정	박정희리더십전문강사양성과정	2015.09.22	2016.01.26	59	20	24	23
	문화유적해설사양성과정	2015.09.24	2015.11.19	56	20	22	22
	중증장애인 지적치료 한지공예	2015.09.15	2015.12.23	50	15	17	17
총 계				573	110	110	108

○ 추진 일정

2015. 8. 6. 사업 선정
 8. 21. 대학회계 1차 추경
 11. 2. 실사(진홍원)
 11. 14. 대응자금 추경 요청
 11. 30. 대학회계 2차 추경 확정
 2016. 1. 11. 대응자금 자금 배정 요청
 1. 21. 대응자금 자금 배정

○ 자금집행 현황

-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기집행 국고보조금	집행률	잔액
90,000,000	77,042,640	85%	12,957,360

- 대응자금

대응투자금	기집행 대응자금	집행률	잔액
18,000,000	6,661,550	37%	11,338,450

- 학습비

학습비	기집행 학습비	집행률	잔액
3,500,000	3,210,990	92%	289,010

○ 대응자금 집행 현황

세목	세세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학위·비학위과정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비	원고비	7,200,000	3,440,000	47.7
	인쇄비	1,500,000	134,400	8.9
인건비	급여	1,200,000	670,800	55.9
	4대보험료	150,000	-	-
	기타 수당	330,000	-	-
교직원 교육훈련비	연수비용	1,400,000	471,760	33.6
행사경비 및 사업운영비	임차료	700,000	-	-
	인쇄비	400,000	444,840	111.2
	회의비(간담회)	600,000	207,550	34.5
	기타 운영비	600,000	4,500	0.7
	소모품구입비	2,120,000	1,287,700	60.7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1,800,000	-	-
합계		18,000,000	6,661,550	37.0

□ 대응자금 집행 저조 사유

○ 원고비

- 중증장애인 지적치료 한지공예는 원고가 없어 원고비 미집행
- 원고비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하였으나 예산 계상 착오로 잔액 발생

평생학습중심대학 강사료 지급 기준

1. 강사료 및 원고료

구 분	강의시간당 강사료(원)		전문가 활용비 (일 기준)	원고료(원) (A4 1매)
	이론수업	실시·실습수업		
A급	100,000	50,000	200,000	5,000
B급	80,000	40,000	200,000	5,000
C급	60,000	30,000	200,000	5,000

- * 강사료는 학력, 직위(급),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아래 강사구분 기준 참조)
- * 현장전문가 활용 시 1일 200,000원 지급
- * 보조강사는 해당 강사의 50%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 원고료는 A4 1매 5,000원으로 산정하며, 수업 차시별 10매까지 인정

○ 인쇄비

- 교내 인쇄실에서 자체 제작으로 전환

○ 인건비

- 국고보조금의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으나 추가 소요 없었음.

○ 교직원 교육훈련비

- 10월에 책임 및 지원강사와 행정직원의 워크숍을 실시(471,760원)
- 2차 워크숍을 계획하였으나 과정별 수료 일정, 강사의 개인의 일정으로 미개최

○ 임차료

- 학교 자체 버스로 대체 운영

○ 회의비

- 당초 계획은 3회로 계획하였으나 1회만 시행함.

○ 기타운영비

- 중증장애인 지적치료 한지공예 과정이 9월에 개강하여 여행자보험료(단체활동시 상해 위험)를 자체예산에서 부담하였음.

○ 소모품구입비

- 세세목 중 장비수선비로 920,000원이 함께 편성, 프로젝터 RGB케이블 교체 1건 지출 이후 미발생.

○ 자산취득비

- 빔프로젝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강의실 리모델링 시설비(자체)에서 프로젝터를 구입하게 되어 구입하지 않음.

2. 회의 녹취록 전문

일 시 2016년 4월 26일(화) 17시 00분

장 소 금오공과대학교 중회의실

의사일정

1.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안
2. 2016학년도 교육 연구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안
3. 2016학년도 제1차 대학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안

부의된 안건

1.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안 107
2. 2016학년도 교육 연구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안 109
3. 2016학년도 제1차 대학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안 111

(17시00분 개의)

○ **간사 배효근** 안녕하세요? 재정위원회 간사 배효근입니다. 재정위원회위원 15분 중 14분이 참석하여 국립대학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및 금오공과대학교 재정회계운영규정 제8조 제5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재정위원회 임시회가 성립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위원장 채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재정위원회 임시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3가지입니다. 제1호 안건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지급규정에 일부개정안이며 제2호 안건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지급계획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호 안건은 2016학년도 제1차 대학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회의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모두 꺼주시고

발언할 기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은 5분 이내로 마쳐주시고 발언을 하실 때에는 꼭 마이크를 켜신 후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안

그러면 제1호 안건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1호 안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교무처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교무처장 이재원** 교무처장 이재원입니다.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업무에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재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심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매 회계연도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은 재정위원회 심의의

결사항으로 하고 영역별 지급기준은 심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영역별 지급기준을 그 교육부하고 컨설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컨설팅을 해서 내용이 바뀌게 되면 바뀔 때마다 이 재정위원회를 열어야 하지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굵직한 것은 재정위원회에서 이제 다루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그 영역별 지급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인데요. 7조에 현행은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내용입니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의 지급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금오공과대학교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해서 1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규정 제 개정 그리고 2호 연도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3호 그밖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이것을 제 7조 연도별 지급계획 총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호 지급대상, 2호 예산, 3호 지급시기, 4호 지급제한 및 환수 이렇게 개정을 하고요. 8조에 있는 연도별 지급계획에 있는 해당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은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을 해당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영역별 지급기준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요. 12조 기타에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칙은 부칙으로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창현** 교무처장님께서 제1호 안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찌보면 필요한 내용을 저번에 처음 만들 때부터 좀 이렇게 했으면 진행에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제1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낙렬 위원님.

○ **최낙렬 위원** 예, 최낙렬입니다. 그 이게 뭐 그러니까 원래 법에 상위법하고는 괜찮은 건지?

○ **교무처장 이재원** 예, 상관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교육부로부터 이 지도계획에 대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타 대학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번거롭지 않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급내용만 따로 떼내도 되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가능하다. 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최낙렬 위원** 또 좀 추가로 질문 드리면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 **교무처장 이재원** 예.

○ **최낙렬 위원** 이 개정하는 게 제7조에 있었던 건데 개정하려면 심의의결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바뀌는 걸로 보면 개정할 때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 **교무처장 이재원** 어떤 규정?

○ **최낙렬 위원** 이 규정.

○ **교무처장 이재원** 규정개정이요?

○ **최낙렬 위원** 예.

○ **교무처장 이재원** 이거 여기서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재정위원회에서 승인받으면...

○ **최낙렬 위원** 아니, 다음부터는.

○ **교무처장 이재원** 다음부터는...

○ **위원장 채창현** 지급규정의 개정은 재정위원회에서 하고 지금 바뀌는 게 영역별지급기준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 **최낙렬 위원** 그런 가요? 아, 그럼 거기 맨 처음에 원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규정 재개정 이 1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안보여서.

○ **위원장 채창현** 간단하게 지금 7조에 있는 1, 2, 3항 중에서 영역별 지급기준만 심의위원회에 넘긴다. 이게 맞는 겁니까?

○ **교무처장 이재원** 예, 맞습니다.

○ **최낙렬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게 없어져서.

○ **간사 배효근** 예, 간사 배효근입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규정개정은 지금 오늘 규정개정을 하고 추후에 만약에 비용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개정을 하게 되면 재정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최낙렬 위원** 그렇죠?

○ **간사 배효근**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 학교에 저희의 운영규정 그 제13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규정은 재정위원회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낙렬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일동**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제1호 안건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들님께서 전원찬성 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학년도 교육 연구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안

○ **위원장 채창현** 다음은 제2호 안건인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2호 안건에 대해서도 교무처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 **교무처장 이재원** 2016학년도 금오공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입니다. 지급 근거는요.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금오공과대학교 재정회계 규정 제13조에 근거해서 2015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액을 영역별로 나눠서 이제 살펴보면요. 교육에 대해서 2015년도에 15억 8,577만 5,000원이 현재 예산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3,441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97.8%고요. 연구영역에서는 23억 1,245만 5,000원에서 집행 잔액이 4,782만 1,000원이 남아서 97.9%를 집행을 했고요. 학생지도에서는 12억 7,331만 9,000원에서 집행 잔액이 1억 8,275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85.7%를 집행을 했습니다. 총 51억 7,154만 9,000원에서 집행액이 49억 654만 9,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2억 6,499만 9,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요. 연구년 교수의 교육영역 및 학생지도영역에 미지급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연구 및 학생지도 분야에서 C등급이 발생을 했고 직원 학생지도 미참여 인원 미지급에 의해서 이와 같은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변

경된 예산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임교원에 대해서 교육영역은 2015년에 비해서 4,869만 1,000원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연구영역에서는 1억 7,445만 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지도 영역에서는 4억 6,660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영역과 연구영역에서 이제 감소하게 된 이유는요. 그 저희 이제 일반과제 일반연구과제에 대한 그 금액이 줄어든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연구년 가신 분들에 그 교재개발비 그 감소된 인원 수 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증액사유를 살펴보면요. 2016년도 전임교원 9명이 증원을 했고요.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는 2015년 한기학기 예산만 편성을 했고 2016년도에는 1, 2학기 2개 학기 예산을 편성을 해서 결국 2억 4,346만 6,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평가지표를 이제 2015년도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횟수는 2015년 8월 그리고 2016년 2월 초와 2016년 2월말에 각각 40%, 40%, 20%를 지급을 했는데요. 2016년도에는 4월 달에 20% 그리고 9월 달에 20% 그리고 내년도 2 월 달에 40%를 지급하는 세 번에 나눠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고요. 실적 인정은 2016년도에는 선택지표에 경우에 2월 실적은 2017년도 평가로 이월을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때 공통지표에 대해서는 이월이 불가합니다. 이것은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이제 연구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생겨가지고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부분을 두 쪽 이상으로 자세히 기재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CQI에 대해서 작년에는 2학기 한 과목 제출로 했는데 지난 번 그 교육부 점검에서 지도받은 사항으로는 1, 2학기 전체과목에 대해서 CQI를 받아야지 된다는 그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단, CQI제출에 대해서 팀티칭이라든가 실험실습 교과목 또 논문지도는 CQI제출을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도에 대해서 이제 달라진 내용으로는 대학원 논문지도가 이번에는 추가가 되었습니다. 대학원생 지도논문, 논문지도 학점당 0.5점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표가 새로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연구년 교수교재개발비 이거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2016년 8월까지 연구유예 및 보고서 미제출자 중간보고서 제출 시 선 지급 이와 같이 했

는데요.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완성본 교재 제출 시 지급으로 변경을 했고요. 한편 단독 저자만 인정하고 역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단독저자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겠다는 그렇게 내용을 바꿨습시다. 그리고 연구영역에서는 교외연구 비수주에 대해서 기본 500만 원당 1점 그리고 50만원 초과시 100만 원당 0.2점 이렇게 됐는데요.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한선을 두는데 최대 10점까지 인정 이렇게 해서 상한선을 뒀고요. 그리고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에 대해서는 동일학회에서 1인 4개 과제부터 적용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최대 3건까지 연구발표하시는 분이 원하시는 그 논문에 대해서 최대 3건까지 인정을 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도에 없던 내용 중에 이제 기타학술시 게재논문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까지는 학술학진 등재지 이상만 저희가 인정을 했었는데요. 비등재지에 논문은 논문실적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등재지에 게재한 논문은 건당 1점씩 해서 신설했습니다. 한편 학생지도영역에 대해서 취업지도 등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대해서 바뀐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 바뀐 내용이 뭐냐면 연간 최대점수에 대해서 상한점수에 대해서 연간 10점까지 인정한다는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없었던 그러한 내용으로 대학원생 상담지도가 이번에 신설됐습시다. 대학원생 상담지도건당 0.5점 단, 원스톱에 상담일지 작성할 때 한해서 학기당 5건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신설했고요. 또 신설된 지표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참여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에 대해서 권장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주문을 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 특강건당 1점 그리고 과학교실 대학체험 현장견학 등을 진행할 때 건당 0.5점 그리고 단순프로그램참여에 대해서 건당 0.2점 단, 1일 최대 2점까지 인정을 하고 연간 최대 10점까지만 인정을 하는 것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교육연구학생 지도비 지급계획과 동일합니다. 단, 차이가 생긴 것은 문구상으로 애매한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급대상에 대해서 지급대상자 금오공과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 중 활동계획서 및 활

동실적 보고서 및 실적물을 제출한 자 교직원에 대해서는 총장 전임교원 공무원 공무원조교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대학회계직원을 모두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지급제외대상자에서 휴가, 휴직, 파견, 신규임용, 직위해제, 정직 및 면직된 자로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교육 및 학생지도영역의 경우에 학기별 1월 미만 연구영역의 경우에는 연 2월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외한다. 그러한 내용이 변경이 됐습시다. 그리고 지급제한대상자로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대상교직원은 퇴직 전 영역별 활동계획서와 영역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영역별 해당비용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전액 여기서는 기준액입니다. 전액 일시 지급한다. 그리고 연구년제 교수의 경우 강의교재 개발을 제외한 교육영역 및 학생지도영역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단, 강의교재개발 및 연구영역에 대해서는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급제한 및 환수 그리고 예산 및 교직원 현황 그리고 영역별 활동계획서 및 보고서심사시기 이것은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급시기에 대해서도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15쪽에 있는 2016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영역별 지급기준 이것은 방금 전에 이제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지급했던 그 계획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채창현** 교무처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내용이 하도 많아서 한꺼번에 제2호 안건에 대해서 따로따로 구별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어떻까 싶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처장 이재원** 교무처장 이재원입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달라졌다고 하는 그 내용은 9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지가 길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일동** 없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제2호 안건인 교육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전원찬성 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6학년도 제1차 대학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안

○ **위원장 채창현**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3호 안건인 2016학년도 제1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호 안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 **재무과장 배호근** 예, 재무과장 배호근입니다. 대학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순세계잉여금 즉, 이제 2015학년도 이월금과 산단전입금 그리고 국가지원금 국가근로장학금 혁신지원사업비 등을 부족한 공공요금과 추가로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10억 562만 5,000원으로 전년도이월금 4억 8,855만 3,000원과 산단전입금 1억 317만 5,000원 그리고 이제 국가지원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등 성립 전 예산반영이 104억 1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성립 전 증액 예산반영은 국립대학교 재정회계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그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편성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후에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금번 추경에 포함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부서를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편성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4억 8,885만 3,000원과 산단전입금 1억 317만 6,000원을 합한 5억 9,202만 9,000원을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사업내용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무처 변호사 자문료는 교원 인사 관련 변호사 자문료를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 및 전임교원 업무교류간담회는 본부 및 학부과간 전임교원간의 대학현황사항 등 업무교류 등을 위해서 간담회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처의 의료공제회사업은 학생의료공제회사업이 현재 산단에 있는 예산을 대학회계로 이관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학생들이 이제 재학 중에 질병이라든지 부상에 대한 진료비로서 2012년까지 학생들이 입학 시에 4만 2,000원을 납부하였

습니다. 그리고 이 경비는 2013년도에 청산하였고 현재 학생들이 납부하고 남아있는 학생들이 402명입니다. 그래서 402명이 졸업할 때까지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모든 학생이 다 집행을 하면 종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획협력처의 대외재정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여기서 CK 혁신지원사업 등 국가재정사업에 소요되는 집필비라든지 평가수당 인쇄비 등을 그 부족분을 1,5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기획협력처의 K-Mooc사업입니다. 대학의 우수강좌를 일반인에게 공개 및 공개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국가재정지원 사업평가지표에 K-Mooc 사업활용계획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제 예산 5,000만원 미 편성시에는 국가재정지원사업 상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중장기발전계획서 수정사업입니다. 특수한 분야를 포함한 중장기발전계획 수정에 따라서 집필비, 인쇄비 등 6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유학기제 운영입니다. 혁신지원사업비 프로그램 운영경비로서 현재 혁신사업지원 사업비가 금년 4월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캠퍼스사진 공모전입니다. 사진공모사진에 대한 전시 및 사진이나 경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부평가입니다. 학부평가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학부과간 동기유발을 도모하여 대학의 경영에 향상을 도모하고자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국의 공공요금 부족분입니다. 사무국공공요금이 전기요금 부족분을 8,0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 운영비입니다. 당초에 과 공무원 과 운영비 1인당 월 만 원분을 과 운영비에 편성하게 되어있으나 누락돼 금번에 이제 1,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료입니다. 매년 30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어서 그 이번 추경예산에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중심 국공립대학 임시회비는 지역중심 국공립대학 발전방안 연구개발을 위해서 각 지역중심 국공립대학 별 각 300만원씩 각출해서 이제 부담하게 되어서 금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국의 교육훈련경비 그리고 교육여비, 행정부서평가, 직원하계연수, 국외대학연수는 그 직원들의 행정역량강화를 하고 근무의욕을 증진시키고 경비로서 이제 총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

정책임보험입니다. 환경오염피해관련 법령에 따라서 2016년도부터 우리 대학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소요예산을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학기술창조관 학교대응입니다. 편성액 5,100만원 중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용역경비가 2,0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산단에서 그 대응되는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본부의 공공IP 활용 대응자금 2016년도 발명 인터뷰 및 공공IP 활용 지원사업으로 대응자금을 산단회계에서 대학회계로 전입하였습니다. 입시앱 설치 툴구입입니다.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입시관련 정보를 모바일환경에서 제공하고자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복권서트입니다. 학생들이 독서력 및 글쓰기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독서활성화프로그램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의 보조금 지원사업 반환금입니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배정예산에서 미집행분에 대해서 대응 투자금을 반환금 1,1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편성입니다. 성립 전 예산편성 총 104억 중에서 국가근로장학금 4억 5,900만원 그리고 혁신지원사업비 전년도 이월금 3억 200만원 그리고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사업 전년도 이월금 1억 7,000만원 그리고 창의교육원의 특성화사업대학회계 이관액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에서 그 11억 6,300만원이 그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국가지원금 9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금 92억 4,9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그 우리 시설비라든지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재무과장님께서 대학회계 제1차 추경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 하셨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낙렬 위원** 예, 최낙렬입니다. 예, 거기 그 변호사 자문료하고 그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료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그 올해만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앞으로 이게 계속 지급이 되게 나오는 건지?

○ **재무과장 배효근** 예.

○ **교무처장 이재원** 올해만 교무처에서 변호사 자문료가 책정되었습니다.

○ **최낙렬 위원** 그러면 이 고문변호사 자문료도 올해만?

○ **재무과장 배효근** 아닙니다. 고문변호사 자문료는 우리 학교 전체직원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할 때 어떤 학교의 송사가 발생하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매년 이 300만원씩 계약에 의해서.

○ **최낙렬 위원** 그러니까 일이 있든 없든.

○ **재무과장 배효근** 그렇습니다.

○ **최낙렬 위원** 그러면 왜 처음에 안 잡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 **재무과장 배효근** 이게 이제 총무과가 업무가 분리되면서 담당자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낙렬 위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변호사 자문료는 문제가 생길 때?

○ **교무처장 이재원** 예, 일이 생기면.

○ **최낙렬 위원** 잡혀지는 거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는 일정금액을 1년마다 드리는 거고.

예, 또 하나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여기 기획협력처 예산들에 대해서 여쭙보려고 했는데요. 그 대외재정지원사업 추진하는데서 업무추진비죠? 이거? 이게 한 2배가 됐는데 이거 우리 지난 번 예산편성할 때 좀 깎았던 기억 이 나는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 기억이 틀리겠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나야 하는지 한번 배경을 좀 알고 싶네요.

○ **기획협력처장 이승희** 예, 저희가 이제 그 ACE 졸업대학이 돼가지고 제2차 재진입을 위해서 보고서를 좀 작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요. CK 사업의 경우에도 이제 그 중간평가 끝나고 나서 이게 탈락한 대학하고 신규 진입대학하고 또 CK 사업을 새로 추가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CK 사업 집필비가 또 필요하게 되고요. 혁신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이것도 매년 평가하고 그 내년도 계획서를 또 내야 합니다. 근데 또 특히 이번에 경우에는 이제 교육부에서 연합대학모형 이거를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 혁신지원사업 안에다가 녹여가지고 이 국립계획혁신 비전이 굉장히 증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공고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집필이 또 필요하게 된 상황이 돼서 세 개 꼭지가 됩니다.

○ **최낙렬 위원** 그러면 예산세울 때 우리 꼭지에는 뭐가 서있었어요? 1,300만 원 잡을 때에는.

○ **기획협력처장 이승희** 팀장님 말씀하시죠.

○ **기획협력처 권승운** 제가 한번 기획협력처 권승운입니다. 최초계획 1,300만원은 ACE하고 특성화하고 포인트사업을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대외재정지원사업이 총액으로 세부분 정도로 세웠는데 우리가 막상 하다보니까 예상 인력 공학 인력양성 이런 사업 같은 생각지 못한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세 분야는 ACE하고 특성하고 포인트했지만 2학기 때도 아마 지금 현재도 교육부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예산이 집필부도 노력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ACE나 특성 포인트 사업을 집필하고 회의를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로 재정교육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기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최낙렬 위원** 내용 같은 거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위원장 채창현** 내용은 자료64페이지를.

○ **최낙렬 위원** 64쪽이요? 이거에 산출을 해요? 이건가요? 비슷한데.

○ **기획협력처 권승운** 기본에 예를 들면 ACE사업 세부내역 이게 525만원 추가로 증액된 건데 집필비가 기존에 5명정도 잡혔습니다. 실제로 5명가지고는 지금 집필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현재도 한 12분정도가 집필하고 계셔서 집필비라든가 인쇄비 회의비 같은 거 그런 거 몇 명분 증액된 겁니다.

○ **구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제 기존에는 5명의 집필위원이 있었다면 지금 12명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12명에 대한 그런 근거를 잡아주셔서 예산을 잡아주셔야지 그냥 만약에 CK나 ACE나 이런 거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돈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보시기에 투명해 보이지 않으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 **기획협력처 권승운** 예, 그래서 예를 들면 ACE 같은 경우도 총 예산이 요청할 때 5명이 아니고 그 이상을 요청했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고요. 실제로 운영하고 접하다보니까 추경에 그 일일이 사업을 다 할 필요는 없고 대외재정지원사업 통으로 회계분야를 해서 이런 산출내용이 제출된.

○ **최낙렬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세울 때 깎았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살아날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시니까.

○ **기획협력처장 이재원**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CK사업이 예상치 못한 것이 하나 발생이 됐는데요. 이제 그냥 3개 사업단위가 선정이 되고 중기의 무교육대학이기 때문에 4개 사업단이 최대할 수 있는 건데 한 개 사업단집필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30%가 탈락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3개 사업단이 기존에 있지만 한 개 사업단이 탈락이 돼 버리면 2개 사업단이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그냥 무조건 3개 사업단이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개만 집필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떨어질 거를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러면 2개 사업단에 대한 집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거기에서 추가가 된 거고 ACE가 당초에 인원수가 적게 했는데 막상 이제 집필을 들어가 보니까 이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그 기존에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집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정도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3쪽, 64쪽을 보면 내내 집필내역이 2명, 3명 해 가지고 모두 사업에 대한 집필이 3명에 의해서 또...

○ **최낙렬 위원** 플러스.

○ **위원장 채창현** 플러스1?

○ **교무처장 이재원** 앞에 플러스입니다.

○ **최낙렬 위원** 앞에 있는 전 번호는 안 같죠?

○ **구정호 위원** 구정호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그만큼 학교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심의할 때 그러면 추가 우리가 추경을 할 때 그러면 학교에서 이런이런 현황이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원칙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좀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인상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야 하는데 물론 급하게 땀방 해줘야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학교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럼 원칙을 세웠다고 하면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처에 예산이 이렇게 두 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사업이 두 배로 진입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크게 예를 들어서 궁

금해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 없이 예를 들어 대외재정사업이 두 배 증액됐다고 하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번 저희가 이제 계속 지적하지만 이런 사항들을 좀 앞으로 계속 원칙이 이렇게 제시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 **재무과장 배효근** 예, 다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본예산 편성할 때는 하여튼 예산의 편성기준과 원칙을 회의 자료에도 명시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협력처장 이승희** 좀 다소 예측을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낙렬 위원** 다른 기획처 일 아니고요. 사무국에서 창조간 그 건설하는 비용에 5,100만원이 추가되기로 되어있는데 이게 산단에서 들어오는 돈은 3,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2,000만원은 결국 대학회계에서 나간다는 거 같아요. 맞나요?

○ **재무과장 배효근** 예, 우선 대학회계에서 집행되는 맞습니다. 본예산에서.

○ **최낙렬 위원** 근데 대학건축에 드는 돈들 뭐 건축관련 돈들 관련해서는 대학회계에서 좀 부담을 안줬으면 좋겠다 하는 원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마저 5,100만원에 2,000만원까지도 일단 산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배효근** 예, 재무과장 배효근입니다. 지금 전체 우리 창조간 건립에 대응이 이제 우리 대학에 부담하는 31억 원인데 우리 쪽에서 이제 2,000만원도 31억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낙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2,000만원 재원이.

○ **재무과장 배효근** 예, 31억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낙렬 위원** 그러니까 31억을.

○ **재무과장 배효근** 예.

○ **최낙렬 위원** 그 말씀이 그 말씀인가요?

○ **재무과장 배효근** 예, 대학회계에서 부담하지 않고.

○ **최낙렬 위원** 대학회계로 안 간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창현** 구정호 위원님.

○ **구정호 위원** 예, 이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보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평생교육원에 보조금지원사업 반환금에 뭐 1,1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거는 좀 잘 이해가 안돼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반환한다는 거는 비용을 못 썼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전년도 거 잡았던 부분이라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원 박용철** 평생교육원 박용철입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내용에 대한 사유는 90페이지에 있습니다. 2015학년도에 평생교육원에서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학년에 사업에 배정된 대응자금은 전액 집행되어야 함에도 미집행 되었으며 대응자금잔액이 전액과 예산은 대학회계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응자금잔액은 국가평생진흥원으로 반납되어야 할 금액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발견한 것은 사업관리운영지침에 보면 주관기관은 교부신청 상차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일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 이 사항을 놓쳤습니다. 이 사업추진경과는 운영과정은 6개 과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9월부터 개강을 해서 12월말, 1월말 해서 교육이 진행되었는데요. 자금집행 현황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000만원을 받아서 85%를 집행하고 1,295만 7,360원은 이자와 함께 반납을 했습니다. 대응자금은 대학회계자금으로 1,80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37%를 집행하고 1,133만 8,450원과 이자가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대학회계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대응자금에 집행사유는 당초에 계획을 조금 계획을 하면서 조금 좀 대상자체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응자금을 요청하는 추경에 요청이 좀 늦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집행하는데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응자금잔액은 평균적으로 반납되어야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고 처분이 처분결과가 나오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구정호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응자금 1,133만 8,450원을 이미 대학회계에 반납이 됐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반납된 여기 대학회계에서 이 부분을 이 돈을 가지고 쉽게 생각했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서 붓고 대응자금이 붙고 이 부분을 다시 반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건가요?

○ **평생교육원 박용철** 예, 대응자금을 자금집행

현황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9,000만원 중에 이제 85%를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1,195만 7,360만 원은 이자와 함께 반납을 했습니다. 했고 대응자금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1,133만 8,450만원과 이자가 국가평생진흥원에 반납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실수로...

○ **구정호 위원** 반납이 안 됐다는 뜻인 거잖아요?

○ **최낙렬 위원** 대학회계로 반납을 했다고요? 반납하지 않고.

○ **평생교육원 박용철** 대학회계로 반납했다고.

○ **최낙렬 위원** 잘못 쫓으니까 다시 가져가라고.

○ **구정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닌 가요?

○ **평생교육원 박용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근데 90쪽에 보면 대응자금 잔액과 이자는 대학회계로 반납된 대응자금의 잔액과 그 밑에 보면 대응자금의 잔액은 국가평생진흥원으로 반납되어야 한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 **구정호 위원** 예, 지금 그거.

○ **최낙렬 위원** 그거 그거예요.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최낙렬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평생진흥원으로 반납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반납을 안 해도 대학회계로 반납을 했으니까 자문했으니까 다시 돌려주세요. 일부 반납해야 합니다. 그 말씀인가요?

○ **재무과장 배효근**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대응자금 1,800만원을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다 집행을 했으면 전혀 반환할 게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미집행금액은 자동으로 우리 대학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이월금으로 다 포함돼서 넘어왔습니다. 그 돈은 그 넘어왔는데 그 돈을 우리가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집행하지 않은 그 금액을 반납해라. 지금 그렇게 진흥원으로 그런 뜻입니다. 아직까지 반납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평생금오공과대학교에서 대응 투자금 잔액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반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최낙렬 위원** 예, 우리가 낸 돈인데도?

○ **구정호 위원** 우리 돈인데 준다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했을 때요.

○ **재무과장 배효근** 예, 맞습니다. 우리 돈인데.

○ **구정호 위원** 가장 쉬운 방법은.

○ **재무과장 배효근** 우리가 다 썼으면 됐는데 덜 쓴 돈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반납해라. 그런 뜻입

니다.

○ **구정호 위원** 나라 돈 덜 쓴 건 주는 건 당연히 한데 저희 돈 덜 쓴 건 저희 것도 반납해라. 이 논리니까.

○ **재무과장 배효근** 예, 그렇습니다.

○ **최낙렬 위원** 손해보는 거네.

○ **구정호 위원** 운영을 완전 잘못된 거죠.

○ **이용학 위원** 대응자금을 반납을 한다고요?

○ **최낙렬 위원** 글썽요.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 **이용학 위원** 저번에 파악할 때는 그렇게 안했던 것 같은데.

○ **정연구 위원** 그 전국적으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국고지원금의 집행률하고 동일한 부분을 대응자금에서 써야 하는데 그걸 안 집행했다고 그러면 그 동일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납을 하라고 왜냐하면 정부지원금을 먼저 쓰고 우리 돈 채길 수 있는 우리 돈은 안 쓴다. 그런 측면에서.

○ **이용학 위원** 아, 그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그 평생학습정책과정에서 평생학습대학의 9,000만원을 국고보조금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20%를 자부담해서 1800만원을 써가지고 총 1억 8,000만원을 전부 재정했는데 국고보조 9,000만원 중에 약 한 1,300만원은 안 썼고 2,000만원 자부담 중에 1,300만원을 안 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고에서 안 쓴 건 당연히 반납을 해야 하는 거고 이제 자부담 중에 미집행한 금액을 사실은 여기에 교육부 사무훈련 관련 지출을 보면 미집행한 경우에 정상시 공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교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0%만 쓰고 60%를 10% 가까이를 안 쓴 거기 때문에 내년도 9,000만원 중에 약 한 66% 정도를 감액해서 3,000만원 밖에 못 받는 결과가 생기는 거지 이게 반환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거를 교육부하고 협의 중이긴 한데 어떻게 할 건지 반환을 할 건지 내년도에 감액을 할 건지 아니면 올해 미집행한 금액만큼 자부담을 더해서 올해 집행할건지 그 부분을 현재 교육부의 첨부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금액이 1,300만원이 일단은 그 편성해 놓고 만약에 교육부에서 자부담을 2,000만원 플러스 전년도에 못했던 거 1,300만원을 더해라. 총 3,300만원을 해라라고 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거를 해놓는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원 박용철** 예, 그렇습니다.

○ **이용학 위원** 그렇잖아요?

○ **평생교육원 박용철** 예.

○ **이용학 위원** 이거 반환하는 돈이 아니고.

○ **평생교육원 박용철** 지금 그 반환해야 될 결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반환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니까 일단은 현재 자부담 되는 것 중에서 그 금액만큼을 잡아먹는 겁니다. 반환한다는 것도 아니고 아직 어찌될지 몰라요. 아직.

○ **최낙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위원장 채창현** 일단 다른 질의사항은 나중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말씀해 주세요.

○ **정연구 위원** 정연구입니다. 아까 그 구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실제 본예산을 수립할 때 각 부서에 예산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쪽 받아가지고 그걸 심의해서 본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추경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정해진 절차와 시스템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번 추경편성과정에서 어떠한 과정하고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재정정책팀 강태구** 예, 강태구입니다. 제가 그 2월말에 회계종료해서 2015년도 집행액을 파악해서 이월금 그 2010년도 본예산대비해서 4억 8,800만원이 남아서 원래 예산편성 때 이제 미 집행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그 필요로 하다. 그런 신규사업도 있다. 해서 저희한테 계속 어느 정도 협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제 전체부서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K-Mooc 사업이나 그런 것들 해서 신규로 사업을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주변재원이 생겨, 최소한도로 필요로 하는 부서나 그거에 한해서 공문을 보내서 1차적으로 수합을 한 후 나름대로 전년대비 많이 감소하고 앞으로 학교재정 지원사업이나 그 부분하고 연동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부서협의 후 본부보직자회의검토를 거쳐서 예산안을 확정해서 지난 주 금요일 날에 3개 제단체 교수회하고 직원협의회, 총학생회의 추가재정위원회 심의자료를 보내드렸고 오늘 이제 오전에 교수회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 **정연구 위원** 그 실은 아까 말씀이 계시는데 10월, 11월 달에 2차 추경예산편성도 있다고 말씀

해 주셨고 그때는 아마 등록금 부분 가지고 할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도 의견수렴절차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은 4월 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10월, 11월대로 되면 기존 편성된 예산부분 중에 잔액 부분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편성예산편성하실 때에는 기존 배정된 예산에 지출요구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신규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재정정책팀 강태구** 예, 강태구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원래 예산이 그 많이 좀 타이트하게 작성했습니다. 그 원래 재정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때 예산 앞으로 계속 재정 여건이 열악하니까 재정보호방안이나 절감방안을 중기재정위원회 심의할 때 같이 수립해서 원래 계속 이행하는 걸로 있는데 지금 재정절감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또 예산배분기준이나 예산관리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공무원을 시행하고 원래 이 예산부터 전체적으로 제로베이스로 검토를 하고 배정기준도 마련하고 또 물론 추경할 때 원래 집행한 거 그것도 다 점검을 해서 2학기 때 등록금 수입이 들어오면 그 전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방향성을 갖고 내년도 본예산 예산하고 또 장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그렇게 추경예산을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구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K-Mooc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K-Mooc 사업에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66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강의제작, 콘텐츠제작, 자막제작 영어번역 이런 부분이 쪽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몇 건의 어떤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 **기획협력처 권승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Mooc 부분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이유는 K-Mooc이 지금 교육부에서 각종 사업에 가점으로 가산점으로 이렇게 있고요. 원래 같은 경우도 지방대학특성화사업에 일단 가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대학회계예산에 일

단은 예산을 이걸 해서 특성화사업 같은 거 신규신청 할 때 그 가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 5,000만원은 작년에 교육부가 기본적으로 한 강좌 신규강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학교에 ACE나 이런 거를 통해서 콘텐츠를 지원을 했지만 교육부에 K-Mooc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개를 해서 이제 강좌를 운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부내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직접개발비가 3,880만원인데 여기는 이제 강의 제작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필료도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삽화제작 그다음에 설계 그래픽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 속에 영상제작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자체에서 하지 않고 한 2, 3분 정도 강의 자료를 소개하는 자료 이거는 외지 줘서 450만원 그다음에 이제 자막제작해서요. 제작자막 제작도 합니다. 300여만 원하고 또 외국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하는 번역비가 들어가서 이제 3,880만원 들고요. 그다음에 강좌는 여기 직접교수님이 운영하는 강좌지원비만 280만원이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이제 보조금 인건비라고 해서 보조금 우리가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 이제 수업을 운영하고 온라인사업을 되기 때문에 이걸 총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 지원인력비도 들어가 있고요. 또 기타로 한 기타비용에 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발표회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강좌를 하고 한번 자기 강좌가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 국가평생교육원에 출장을 가서 어떤 내용을 또 코치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게 또 있어서 이 5,000만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강좌 한 강좌당 5,000만 원 정도 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를 기초로 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일단은 했습니다.

○ 정연구 위원 결국은 한 강좌가 올라가는 거네요?

○ 기획협력처 권승운 예.

○ 정연구 위원 알겠습니다.

○ 구정호 위원 결론적으로 한 강좌라는 말씀이 신거죠?

○ 기획협력처 권승운 한 강좌 맞습니다. 예.

○ 최낙렬 위원 강좌가 이 밑에 있는 거죠?

○ 구정호 위원 아래 있는 그 강좌말씀하시는 거죠? 16년도 개발강좌 해 가지고 유체역학이라고

○ 기획협력처 권승운 예, 유체역학.

○ 최낙렬 위원 박준연 교수.

○ 기획협력처 권승운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초에는 2개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재정지원사업 교육부 문의를 해 보니까 한 개정도만 하면 가점을 인정해줘서 최소 한 강좌정도 올렸고요. 단가를 좀 줄이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교육부사업이니까 이 예산 교육부가 이렇게 교육부 예산 교육부가 책정하는 예산정도 일단은 책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 정연구 위원 그 K-Mooc 개발하게 되면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5,000만원씩 드는데 실제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학교의 어떤 뭐 혜택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 말고 더 뭐 있습니까?

○ 기획협력처 권승운 사실 유체역학의 기계공학과 교수님이 KOCW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조회수가 최고 많아서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뜨고 해서 K-Mooc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강의를 하시면 진짜 우리 학교에 홍보도 하게 되고 금액이 5,000만원적지는 않지만 잘 만들어서 공부를 하면 학교의 성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국가가 외국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더 더욱이 해볼 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000만원이 되더라도 만약에 이제 Ace 재진입이나 특성화사업에 만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대학회계예산도 예비집행 금액...

○ 정연구 위원 한 과목은 대학회계예산으로 하고 한 강좌는 교육부에서 서포터를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최낙렬 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의 신청하면 교육부에서 이렇게 그 사업비를 주고 그러지는 않았나요? 그런 거 아닌가요?

○ 기획협력처장 이재원 이게요. 기획처장 이승희입니다. 저희가 ACE에 진입을 해서 거기도 반영을 CK도 반영을 해 났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단계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ACE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게 결국은 다른데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나 떨어지더라도 한 개 이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 최낙렬 위원 아니요. 제 질문은 감사합니다. 예,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혹시 교육부에서 왜 우리 연구재단 이런 것처럼 사업으로 이렇게 신청하면 그런 거 이렇게 선정해서 그런 사업 아니냐고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 기획협력처 권승운 맞습니다.

○ 최낙렬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안하고 우리가

왜 돈 들어서 해야 하는지 그거를 좀 물어보는 거죠. 거기다 하나의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아는데 선정되면.

○ 기획협력처장 권승운 그게 제가 알기로 이 K-Mooc 사업이 그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신규 참여하는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정부재정 지원 사업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 학교는 정부재정 지원 사업을 받다보니까 그 유형으로 신청을 일단 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 최낙렬 위원 개인으로?

○ 기획협력처장 권승운 예, 의무적으로 국가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재정 지원 사업에 심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예.

○ 위원장 채창현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께서 제1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대학전체 수요조사가 부진하지 않았나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제2차 추경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는 대학전체 수요조사를 집행률까지 반영해서 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방금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일동 예.

○ 위원장 채창현 제3호 안건인 2016학년도 제1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전원찬성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건의 안건에 심의하였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2개 이상인 경우 간사인 3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처장님, 손창식 위원님, 서명성 위원님 세 분을 간사인으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일동 없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다른 안건이나 의견사항이 없으므로 제3회재정위원회임시회 회의를 종료하고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출석 위원(14인)

채 창 현	이 승 희	이 재 원	방 대 석
이 용 학	김 중 필	정 연 구	최 낙 렬
구 정 호	손 창 식	이 정 희	서 명 성
장 세 광	홍 순 달		

[보고사항]

○간사 선임

부서명	직책	성명	연월일
사무국	재무과장	배효근	2016.4.26.